



인천광역시 서구

도서관, 청소년센터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 적정성 검토연구용역

(2025. 08)



제 출 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도서관, 청소년센터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5. 8.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이 동 권	공공전략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원	김 지 혜	공공전략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윤 동 수	공공전략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김 대 규	공공전략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허 제 인	공공전략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보조원	이 진 모	공공전략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I. 과업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과업 범위	2
3. 과업 수행 절차	3
II. 환경분석	7
1. 인천시 서구 환경분석	7
2.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현황	11
3. 대상 시설 환경분석	24
III. 위탁 적정성 검토	47
1. 대안별 적정성 검토	47
2. 수지 분석(경제적 타당성)	70
3. 인력수요 검토	82
4. 위탁 종합 판단 및 제언	87

[표 차례]

[표 1] 과업의 범위	2
[표 2] 과업 수행 절차	3
[표 3] 인천 서구 지리적 위치	7
[표 4] 인천 서구 인구 및 세대현황(1)	8
[표 5] 2020-2025 인천 서구 인구현황	9
[표 6] 서구 관내 교육기관	10
[표 7] 인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11
[표 8] 인천시 구별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12
[표 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규정	14
[표 10]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	15
[표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	16
[표 12] 청소년기본법	17
[표 13] 청소년활동진흥법	18
[표 14] 인천광역시 및 서구 청소년활동 관련 조례	19
[표 15] 인천광역시 및 서구 도서관 현황	20
[표 16] 도서관법	22
[표 17] 도서관법 시행령 사서배치기준[별표5]	23
[표 18] 인천광역시 및 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23
[표 19] 구립 청소년센터 현황(1)	25
[표 20] 구립 청소년센터 현황(2)	26
[표 21] 청소년센터 인력구성	27
[표 22] 청소년센터별 프로그램 현황(1)	28
[표 23] 청소년센터별 프로그램 현황(2)	29
[표 24] 청소년센터 이용자 현황(2021-2024)	30
[표 25] 청소년센터 동아리 현황	31
[표 26] 청소년센터 부문 사업수입 및 경비 현황	31
[표 27] 서구 구립도서관 현황(1)	33
[표 28] 서구 구립도서관 현황(2)	34
[표 29] 구립도서관 자료현황	35
[표 30] 구립도서관 도서현황	36
[표 31] 구립도서관 특수도서현황	36
[표 32] 구립도서관 정원 및 현황	38
[표 33] 구립도서관 직원 현황	38
[표 34] 구립도서관 회원현황	39
[표 35] 구립도서관 이용실적	40

[표 36] 구립도서관 이용실적	40
[표 37] 구립도서관 대출권수 현황	41
[표 38] 구립도서관 사업별 실적(2025)	41
[표 39] 구립도서관 기타 프로그램	42
[표 40] 구립도서관 독서문화행사	43
[표 41] 도서관 부문 사업수입 및 경비 현황	43
[표 42] 신규도서관 개요	44
[표 43] 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및 방식	47
[표 44]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3
[표 45] 인천광역시 도서관 운영현황(1)	54
[표 46] 인천광역시 도서관 운영현황(2)	55
[표 47] 법령에 따른 대안설정	56
[표 48]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현황	57
[표 49]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기관 현황	57
[표 50] 인천서구문화재단 정관 및 관련 조례	57
[표 51]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기여 여부	59
[표 52] 시장성 테스트 검토항목	60
[표 53] (공단)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수탁 현황	61
[표 54] 공단 공모사업 및 대외성과	61
[표 55] 운영주체별 설립 목적	62
[표 56] 인천서구문화재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2023)	62
[표 57]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2024)	63
[표 58] 경영평가 개요	64
[표 59] 경영평가등급	64
[표 60] 관리 및 운영 감독 기관 개요	67
[표 61] 실정법 상의 논의	68
[표 62] 책임행정 및 책임경영 방안	69
[표 63] 비용증가율	71
[표 64] 기준 호봉표	71
[표 65] 인건비 기준	72
[표 66] 인건비 테이블	73
[표 67] 신규도서관 정원 설정	74
[표 68] 청소년센터 및 구립도서관 연도별 사업수입 추정	75
[표 69] 운영방식에 따른 청소년센터 인건비 추정	77
[표 70] 운영방식에 따른 구립도서관 인건비 추정	78
[표 71] 청소년센터 및 구립도서관 경비 추정	79
[표 72] 운영방식에 따른 청소년센터 수지분석(2026-2030)	80

[표 73] 운영방식에 따른 구립도서관 수지분석(2026-2030)	81
[표 74] 청소년센터 부문 인력 검토	83
[표 75] 대안별 사서 요구 인력	85
[표 76] 도서관별 사서 인력 산출	85
[표 77] 인력 구성(안)	86
[표 78] 운영 주체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87

[그림 차례]

[그림 1] 인천 서구 행정구역 지도	7
[그림 2] 구립도서관 조직도	37
[그림 3] 조감도 및 건물단면도	44
[그림 4]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도	65
[그림 5] 인천 서구문화재단 조직도	66

I. 과업 개요

① 배경 및 목적

② 과업 범위

③ 과업 수행 절차

I. 과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하며,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도모하여야 함
- 도서관은 각종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보존하고 축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교양습득, 학습활동, 조사연구, 평생학습과 독서문화 진흥 등에 기여해야 함(도서관법 제3조1)
- 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활동시설의 하나로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로 구분됨(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성장·발전을 위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있는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도서관과 청소년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전제로 하며, 변화하는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은 「도서관법」에 의해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도서관법 제51조2). 청소년수련시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의 3),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인천 서구는 6개소의 도서관과 4개소의 청소년센터를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서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서관과 청소년센터와 같이 공공재원을 확보하여 공중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자

원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 조직활동과 서비스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당위성을 가짐¹⁾

- 조직 공공성은 공공재원을 확보하여 조직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직 특성으로, 조직 내·외부 환경에서 오는 영향 요소를 공공성으로 포착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며, 서비스 공공성은 수혜자에게 공공이익, 즉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 특성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침
- 인천 서구는 2026년 7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를 앞두고 있으며, 주요 기관의 위·수탁 기간의 종례가 도래함에 따라 2025년 3월 7일 제정·시행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신설도서관 1개소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본 과업은 인천 서구에서 설립하고 운영 중인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등의 신규 및 기존 공공시설물의 위탁 적정성 검토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인천 서구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6개소와 2026년 개관 예정인 신설도서관 1개소, 청소년센터 4개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탁 대상 사업의 운영대안과 예산절감 효과 분석,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인천 서구 공공시설물의 운영 효율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과업 범위

- 본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1] 과업의 범위

구분	내용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5년)
공간적 범위	○ 인천 서구 구립도서관(7개소, 신설 1개소 포함) 및 청소년 센터(4개소)
과업 내용	○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위탁 여부 판단

1) 김혜영&김기영. "공공도서관 공공성 측정 연구 - 지역 주민의 인식을 기반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2023): 241-269.

3. 과업 수행 절차

- 본 과업은 1.연구개요 → 2.환경분석 → 3.사업적정성 분석 → 4.유사사례분석 → 5.위탁사업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의 절차를 통해 수행

[표 2] 과업 수행 절차

수행절차		수행내용	수행방법
Phase 1.	연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계획 및 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ck off meeting •관계자 의견수렴
Phase 2.	환경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서구 환경분석 •도서관 및 청소년 센터 관련 법령 및 정부정책 •도서관 및 청소년 센터 관련 인천시 조례 및 정책 •도서관 및 청소년 센터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검토
Phase 3.	사업 적정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도서관 및 청소년 센터 현황 분석 •사업별 수지분석 •적정조직 및 인력 구성 분석 •수탁 및 대행기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검토 •2차 자료 분석 및 재구성 •수지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Phase 4.	유사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사업 및 운영기관 사례 조사 및 운영현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검토 •Case Study
Phase 5.	위탁사업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검토 •위탁 종합 판단 및 실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검토

II. 환경분석

- ① 인천시 서구 환경분석
- ②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현황
- ③ 대상 시설 환경분석

1.2. 인구

- 2025년 6월 말 기준 인천 서구의 인구는 644,376명, 276,849세대임
 - 남자 324,136명(50.3%), 여자 320,240명(49.7%)이며, 평균 세대원 수는 2.33명임
 - 아라동이 72,201명이 가장 인구수가 많으며, 가정 3동이 8,453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임
 - 검단동 외 6개의 아라뱃길 복단 지역은 2026년 7월 검단구로 분구될 예정으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2009년~2026년)과 입주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인구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검단구의 분구 시 2025년 6월 기준 약 37%의 인구가 서구에서 감소 예정

[표 4] 인천 서구 인구 및 세대현황(1)

(단위 : 명, 세대)

구분	인구수			세대수
	계	남	여	
합계	644,376	324,136	320,240	276,849
검암경서동	54,091	27,631	26,460	23,874
연희동	36,724	18,685	18,039	18,396
청라1동	30,478	15,101	15,377	12,009
청라2동	47,844	23,673	24,171	18,263
청라3동	36,103	17,966	18,137	14,134
가정1동	41,503	20,521	20,982	17,569
가정2동	17,042	8,662	8,380	7,120
가정3동	8,453	4,237	4,216	4,143
신현원창동	28,881	14,473	14,408	12,406
석남1동	19,897	10,263	9,634	10,344
석남2동	11,698	6,023	5,675	5,793
석남3동	13,116	6,582	6,534	6,692
가좌1동	12,496	6,671	5,825	6,687
가좌2동	18,200	8,908	9,292	7,507
가좌3동	15,013	7,688	7,325	7,829
가좌4동	12,097	6,191	5,906	5,749
검단동	32,335	16,872	15,463	15,341
블로대곡동	37,068	18,605	18,463	14,586
원당동	24,517	12,459	12,058	10,477
당하동	28,369	14,023	14,346	12,205
오류왕길동	25,025	12,695	12,330	10,519
마전동	21,225	10,502	10,723	8,148
아라동	72,201	35,705	36,496	27,058

자료 : 동별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2025년 6월말 기준

○ 인천 서구의 인구는 2020년 542,040명에서 2025년 6월 기준을 102,336명 증가한 644,376명으로 나타남(증감률 : 18.88%)

○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 65세 노인인구를 제외하면 영유아기~중장년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19세~39세의 청년기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인천 서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85%로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5] 2020-2025 인천 서구 인구현황

(단위 :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06
전체인구	542,040 (100.0)	555,380 (100.0)	589,013 (100.0)	624,358 (100.0)	634,064 (100.0)	644,376 (100.0)
0세-5세	26,791 (4.9)	25,770 (4.6)	27,258 (4.6)	28,840 (4.6)	28,289 (4.5)	28,669 (4.4)
6세-12세	39,959 (7.4)	41,215 (7.4)	44,575 (7.6)	46,470 (7.4)	45,489 (7.2)	45,646 (7.1)
13세-18세	33,569 (6.2)	33,979 (6.1)	34,943 (5.9)	36,670 (5.9)	38,291 (6.0)	39,207 (6.1)
9세-24세	96,846 (17.9)	96,778 (17.4)	98,973 (16.8)	101,565 (16.3)	101,830 (16.1)	102,441 (15.9)
19세-39세	158,257 (29.2)	158,423 (28.5)	166,415 (28.3)	175,468 (28.1)	174,760 (27.6)	175,976 (27.3)
40세-64세	225,377 (41.6)	232,790 (41.9)	245,991 (41.8)	259,526 (41.6)	262,424 (41.4)	265,615 (41.2)
65세 이상	58,087 (10.7)	63,203 (11.4)	69,831 (11.9)	77,384 (12.4)	84,811 (13.4)	89,263 (13.9)
전기노령인구 (65세-79세)	46,053 (8.5)	50,176 (9.0)	55,436 (9.4)	61,988 (9.9)	68,496 (10.8)	72,417 (11.2)
후기노령인구 (80세 이상)	12,034 (2.2)	13,027 (2.4)	14,395 (2.4)	15,396 (2.5)	16,315 (2.6)	16,846 (2.6)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0-2024.

-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구수와 그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65세~79세 사이의 전기 노령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의 영향으로 보임

○ 2023년 기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검단신도시 주거지역의 입주가 활발해지면서, 인천 서구의 인구변동이 이동이 발생함

- 통계청 자료(2023)에 의하면, 서구 아라동(22,926명), 가정 2동(10,513명), 검암경서동(7,979명) 순으로 총인구 증가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남

- 서구 가정 2동의 인구 증가율이 176.2%로 가장 높았으며, 아라동 57.8%, 검암경서동 17.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서구 석남 3동의 인구 감소율이 -5.2%으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석남 1동 -4.1%, 가좌 2동 -4.0% 순으로 나타남

1.3. 서구 관내 교육기관

- 2025년 기준, 인천 서구에는 총 185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3,450개의 학급에 83,596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음
- 유치원은 86개소, 475학급, 11,197명이, 초등학교는 52개교, 475학급, 37,879명, 중학교는 27개교, 669학급, 18,730명, 고등학교는 19개교, 582학급, 15,491명, 특수학교는 1개교 52학급, 302명이 재학하고 있음

[표 6] 서구 관내 교육기관

(단위 : 개소, 명)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
계	185	83,569	3,450
유치원	86	11,197	475
초등학교	52	37,879	1,672
중학교	27	18,730	669
고등학교	19	15,491	582
특수학교	1	302	52

자료 : 2025 구정현황. 인천광역시 서구청.

2.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현황

2.1. 인천시 청소년센터

가. 인천시 청소년센터 현황

- 전국에는 총 864개소(공공 685개소, 민간 179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며, 인천에는 공공 18개소, 민간 5개소 등 총 23개소의 수련시설이 있음
 - 청소년 수련관 9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9개소, 청소년수련원 2개소, 유스호스텔 3개소로, 구립 또는 군립이 설립한 청소년수련시설은 18개소, 민간이 설립한 청소년수련시설은 5개소임
 - 위탁운영은 17개소, 직영은 6개소임
 - 위탁 운영의 경우, 모두 공공이 설립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공익성을 가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영의 경우, 공공이 설립하여 공공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남동구 1개소였으며, 5개소는 민간이 설립하여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음

[표 7] 인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계	23	9	9	2	0	3	0
공공	18	9	9	0	0	0	0
민간	5	0	0	2	0	3	0

자료 : 여성가족부. 2025.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인천시 구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강화군에 5개소로 가장 많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구에는 가장 많은 청소년 문화의집(청소년 센터)이 소재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원 2개소와 유스호스텔 3개소는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재단법인, 주식회사, 개인 등 운영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남

[표 8] 인천시 구별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계	18	5	9	0	9	0	0	2	0	0	0	3	0	0
서구	4	0	1	0	3	0	0	0	0	0	0	0	0	0
중구	1	0	1	0	0	0	0	0	0	0	0	0	0	0
계양구	2	0	1	0	1	0	0	0	0	0	0	0	0	0
남동구	2	0	1	0	1	0	0	0	0	0	0	0	0	0
동구	1	0	1	0	0	0	0	0	0	0	0	0	0	0
미추홀구	1	0	1	0	0	0	0	0	0	0	0	0	0	0
부평구	2	0	1	0	1	0	0	0	0	0	0	0	0	0
연수구	2	0	1	0	1	0	0	0	0	0	0	0	0	0
강화군	2	3	1	0	1	0	0	2	0	0	0	1	0	0
옹진군	1	2	0	0	1	0	0	0	0	0	0	2	0	0

자료 : 여성가족부. 2025.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나. 관련 정책 및 법률

1)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3~'27)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5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 2월 제 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 및 발표됨
 - 청소년 수의 지속감소, 위기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수요 다양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의 변화 발생, 근로청소년의 부당 처우 등의 보호 사각지대 및 근로형태 다양화로 인한 청소년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됨
 - 디지털 활용이 확대되는 반면, 이를 통한 부작용 및 유해환경 노출이 증가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원격교육 확대로 청소년 간 학습 및 디지털 격차가 야기됨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 비전 실현을 위해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안정한 보호환경 조성의 2대 목표를 설정함

-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강화에 중점
-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수립함
 -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 및 교육지원, 미래역량 제고 활동 확대와 함께 안전한 청소년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관리와 종합평가를 내실화를 세부과제로 수립함. 또한 학교안팎 청소년활동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내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자치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간 소통을 강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고자 세부과제를 수립함
-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확대와 청소년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함
- 또한 지역단위 청소년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정책 학교 안팎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2)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5.01)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허가, 공공·민간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 동법 제16조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유형, 위탁업무절차 및 위탁 방안을 명시하고 있음
 - 위탁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수탁자의 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며, 시설운영의 안전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기준을 정함. 선정기준에는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가 필수적으로 포함됨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 업무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에 따라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도모
 - 직영시설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관련 규정에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명시된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민간시설은 자체적인 운영규정 제정을 권장하고 있음
 - 위탁(대행)시설은 수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탁단체 또는 대행기관의 규정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명시된 경우 별도의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실적보고와 평가관리, 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종사자 관리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수용정원대비 전체 직원 수를 최소 4%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 수를 최소 3%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함

[표 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규정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 이용시설	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고(최저 근무기간)
		급수	수용정원 700명이상	수용정원 699~200명	수용정원 200명 미만	
3급	관장	1급	관장			
4급	사무국장	2급	실(국)장	관장, 원장		4년
5급	1급	3급	부(차)장	부(차)장	관장, 원장	4년
6급	2급	4급	팀(과)장	팀(과)장	팀(과)장	4년
7급	3급	5급	대리/주임	대리/주임	대리/주임	4년
8급	4급	6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9급	5급	7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자료 : 여성가족부. 2025.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라운영지침.

-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을 청소년기본법 제 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하며, 시간외 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

- 인천광역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복지, 활동, 참여, 역량개발, 권익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표 10]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7조에 근거하여 1996년 개소 •봉사, 교육, 조사, 네트워크 사업 등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소질 및 역량개발 지원 •청소년활동현장 역량증진지원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청소년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근거 •청소년프로그램 : 청소년 기구, 학교연계, 문화행사, 교육체험 •생활체육프로그램 : 수영, 헬스, 피트니스, 클럽스포츠, 생존수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연 4회 도시간 상호 방문 초청 역토편방 등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제63조 -청소년문화대축제, 청소년 문화예술경영 대회 개최 •청소년 참여 활성화 기구 운영 -‘청소년웹진MOO’ 청소년기자단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본법 제48조 2에 근거한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중학교 3학년의 청소년 대상 •전문체험, 학습지원, 자기개발, 특별지원, 생활지원 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에 근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9세 이상~24세 이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가능)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의료 등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을 중단한 9세~24세의 학교밖 청소년들의 자립, 취업, 학업복귀 등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지원 서비스 제공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올바른 성지식 습득 및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함 •체험관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특별기획사업
			<p>청소년문화센터 다락(多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세~24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 및 교류활동의 장을 제공 •청소년전용 수다공방 •청소년 진로진학 사업 •청소년 특성화 사업 •청소년 인성함양사업 •지역네트워크 사업 등

자료 : 인천시청(<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4009>)

- 서구 또한 관내 청소년의 바른성장과 활동 및 참여, 역량개발을 위해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 방과후 활동지원, 교육혁신지구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신체적·정신 건강증진사업, 인터넷 중독예방교육, 인성교육, 멘토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교육혁신지구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아동·청소년 바른성장 진 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자치활동, 진로직업체험, 학교연계활동, 각종 문화체육 활동 등 -서구청소년센터 -연희청소년센터 -검단청소년센터 -가좌청소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4차 산업 특성화실 '메이커스 Lab'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에서 코딩, 드론, 3D프린터, VR체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교육, 돌봄시설 -상담, 전문체험, 가족프로그램, 급식 및 귀가버스 •진로직업체험실운영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에서 제과제빵, 뷰티아티스트, 바리스타, 공예가, 4차산업 전문가 등 전문기술 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지원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보건소를 통해 관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자세, 체형, 걸음걸이, 거북목 검사 및 결과 상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서구 영재교육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DHA장애,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선별검사 •학교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발굴된 고위험군에 대하여 추가 정밀검사 진행, 학생, 부모 심층상담 •치료비 지원 등 필요지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를 통해 관내 유아동, 청소년 기관 도는 단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중독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 4~6학년, 중등 1~3학년 학생 중 선발하여 탐구 중심의 과학수학분야 융합프로그램 지원 •경인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연극,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서구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 •서구 중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세대 학생과 멘토링캠프, 인하대학생과 대학진로탐색 멘토링 진행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청(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welfare/life/teenage)

4)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정당한 대우, 권익보장과 함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기본이념, 청소년의 정의(9세~24세), 청소년·가족·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보장, 차의 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있음

[표 12] 청소년기본법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거저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p>제4장 청소년시설</p> <p>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p>

5)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약칭 : 청소년활동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2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적극적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시설과 각종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협력사항, 청소년활동시설의 위탁 관련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표 13] 청소년활동진흥법

<p>제3장 청소년활동시설</p> <p>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청소년수련시설</p> <p>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p> <p>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p> <p>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p> <p>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p> <p>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p> <p>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p> <p>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p> <p>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각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p>

- 시행규칙에 의하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에 수련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도록 하고 있음(여성가족부령 제220호, [별표3]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6) 인천시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와 서구는 조례를 지정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과 다양한 활동욕구 충족을 위한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활동의 적극적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위탁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활동시설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표 14] 인천광역시 및 서구 청소년활동 관련 조례

구분	내용
인천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2.2. 인천시 도서관

가. 인천시 도서관 현황

- 2024년 기준 인천시에는 공공도서관 54관, 작은 도서관 310관, 대학도서관 13관, 학교도서관 537관, 장애인도서관 1관, 전문도서관 16관, 교정시설도서관 1관 등 932관이 소재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서구에는 공공도서관 9관, 학교도서관 98관, 전문도서관 8관 등 115관이 위치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은 검단도서관, 검안도서관, 석남도서관, 신석도서관, 심곡도서관(이상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인천광역시 마전도서관,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서관,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이 소재하고 있음
- 서구 관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1관당 도서자료 수는 95,124건, 1관당 방문자 수는 225,737명, 1관당 대출도서 수는 152,053권으로 나타남
 - 서구 관내 공공도서관의 1관당 도서 자료 수는 인천시 전체보다 적었으나, 1관당 방문자 수, 1관당 대출도서 수는 인천시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 인천광역시 및 서구 도서관 현황

(단위 : 개소, 건, 명, 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관당 도서자료수 (2024년 기준)	1관당 방문자 수 (2024년 기준)	1관당 대출도서 수 (2024년 기준)
	인천	서구	인천	서구	인천	서구	인천	서구	인천	서구			
공공도서관	55	9	58	9	58	9	60	9	54	9	(인천)97,268 (서구)95,124	(인천) 195,010 (서구) 225,737	(인천) 111,855 (서구) 152,053
작은도서관	276	72	257	64	300	74	308	75	310	89** *	(인천)6,348 (서구)0	(인천)4,757 (서구)0	(인천)3,945 (서구)0
대학도서관	12	-	13	-	13	-	13	-	13	-	(인천) 350,981	-	(인천)21,274
학교도서관*	525	86	533	88	541	93	542	96	537	98	(인천)18,050 -	(인천)5,490 -	- -
장애인도서관	1	-	1	-	1	-	1	-	1	-	(인천) 16,465**	(인천)703**	(인천)0**
전문도서관	16	8	16	8	13	8	15	8	16	8	(인천)27,030 -	-	(인천)1,842 -
교정시설도서관	1	-	1	-	1	-	1	-	1	-	(인천)10,060	-	(인천)700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23년 기준
 ***2025 규정현황. 인천광역시 서구청.

나. 관련 정책 및 법률

1) 제 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 제 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기준이 됨.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 모두의 도서관’, ‘공동체 활력, 연대·협력 플랫폼’, ‘국가 경쟁력 강화, K-지식자원보고’, ‘미래를 위한 준비, 도서관 혁신’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12개의 핵심과제, 24개 추진과제, 49개의 실행계획을 선정함
-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는 ①코로나19 이후 도래한 뉴노멀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자원 및 서비스 확대, 이용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②저출산·고령화·다문화·지역소멸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확립, ③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 업무 환경 및 서비스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디지털 혁신 방안 마련, ④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정책체계 확립,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포함
- 인천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일상 향유 역량 강화, 사람과 마을을 잇는 지역아카이브 구축(마을 이야기 브랜드화 등, 13개소→15개소), 광역대표도서관 내 지역자료 납본 보존센터 설치운영(1개소), 사서 재교육 강화(39건→40건) 등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함

2) 제 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

-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인 ‘독서 문화’를 진흥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독서의 저변 확대”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독서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독서습관 형성지원, 독서환경 개선, 독서문화진흥 기반 고도화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대 정책과제를 선정함
- 정책과제 중 ‘지방시대, 지역사회 독서기반 강화’는 독서문화진흥 업무의 중앙과 지역 간 연계 강화,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체계화 등으로 지역사회 독서기반 강화를 목표로 지역기반 독서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독서지표 개선, 독서진흥 표준조례 제정 및 보급을 선정함

3) 도서관법

-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도서관의 구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서관의 업무 및 책무, 협력업무, 재원조달, 인력, 시설, 장서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또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을 정하여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 심의,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제4장 제29조와 제32조, 제33조에서는 국·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치, 업무,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제38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16] 도서관법

<p>제2절 국·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p> <p>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p> <p>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사서의 자격 구분과 요건, 배치기준 등을 [별표5]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표 17] 도서관법 시행령 사서배치기준[별표5]

<p>[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9. 12.></p> <p>1.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p> <p>가.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p> <p>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p> $\text{사서 수} = \frac{\text{공공도서관당 인구수} - 2\text{만명}}{2\text{만명}}$ <p>2)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p> $\text{사서 수} = \frac{\text{도서관 면적} - 330\text{제곱미터}}{330\text{제곱미터}}$ <p>나. 이동도서관·스마트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서비스마다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p> <p>2. 국공립 작은도서관 :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p>	
------------------------------------------------------------------------------------------------------------------------------------------------------------------------------------------------------------------------------------------------------------------------------------------------------------------------------------------------------------------------------------------------------------------------------------------------------------------------------------------------------------------------------------------------------------------------------------------	--

4) 인천시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와 서구는 조례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지적능력 향상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 독서문화진흥과 독서환경 조성을 통해 독서문화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자료의 효율적 제공과 평생교육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향상을 위해 도서관의 기능과 책무를 명시함
-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점자 보급과 지원, 점자 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음

[표 18] 인천광역시 및 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구분	내용
인천시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인천광역시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3. 대상 시설 환경분석

3.1. 청소년센터



가. 사업근거

- 제 7차 청소년기본계획(2023~2027)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2025.1)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및 시설기준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위탁방안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서구 민선8기 분야별 공약사업 중 「아이키우기 좋은 서구」 이행
 - 구민 중심의 ‘저출산 위기대응, 지역성장’의 주요 역점사업 확대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및 청소년 친화적 시설환경 조성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서구 실현
 - 청소년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역돌봄 및 연계 확대
 - 청소년 친화적 시설물 안전성 강화



나. 시설현황

- 인천 서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센터는 총 4개소로 가좌청소년센터, 서구청소년센터, 검단청소년센터, 연희청소년센터임

[표 19] 구립 청소년센터 현황(1)

구분	시설현황		비고		
가좌 청소년 센터	소재지	원적로 7번길 12			
	규모	지하 1층~지상 4층 대지면적 : 1,913.1㎡ 연 면 적 : 4,594.94㎡			
	주요시설	4층	메이커스Lab 강의실 1, 2, 다목적강당 파티룸		
		3층	방송·스튜디오, 콘텐츠공작소1, 2, 직업체 험실, 공연연습실1, 2 창작디자인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웹디자인실		
		2층	사무실, 단장실, 커뮤니티 광장(로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인/집단/전화상담 실, 공부방, 활동실, 강의실		
		1층	플레이존, 북카페, 디지털북카페, 휴카페, 인터넷카페		
		지하 1층	주차장,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창고		
개관일	2019.11.02				
서구 청소년 센터	소재지	원창로 92			
	규모	지하2층~지상3층 대지면적 : 9,921㎡ 연 면 적 : 5,505.93㎡			
	주요시설	3층	체육활동장, 문화강의실, 모의직업체험실 (제과제빵실, 뷰티아트실), 메이커스 Lab ‘공생’, 하늘정원, 직원휴게 실2		
		2층	운영사무실, 상담실/양호실, 방과후아카데 미실, 음악활동실, 공연연습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미디어실, 지도자실, 초록강의실, 그린스테이지		
		1층	공연장, 꿈자람체험실, 호기심정원, 직원휴게실1		
		지하 1층	남·여 화장실		
		지하 2층	야외광장, 농구장, 풋살경기장, 사계절 텃밭, 주차장		
개관일	2006.03.10				

[표 20] 구립 청소년센터 현황(2)

구분	시설현황		비고		
검단 청소년 센터	소재지	완경로 188번길 3			
	규모	지하1층~지상3층 대지면적 : 737.2㎡ 연 면 적 : 1,286.96㎡			
	주요시설	3층	강의실2, 다목적실2		
		2층	청소년운영위원회실, 강의실1, 다목적실1, 도서실, 운영사무실		
		1층	메이커스Lab 창(3D실, 세미나실, 공작실 1·2), DVD&노래방, 놀터		
		지하 1층	밴드연습실, 기계실, 창고		
개관일	2009.01.07				
연희 청소년 센터	소재지	승학로 264			
	규모	지상1~지상4층 대지면적 : 1,310.8㎡ 연 면 적 : 2,646.94㎡			
	주요시설	4층	다목적강당, 연습실, 연습홀, 노래연습실		
		3층	메이커스랩, 모둠활동실, 조리실습실, 창작공방실, 연습실, 연습홀		
		2층	사무실, 북카페, 인터넷카페, 청소년운영위원회실, 영화감상실, 동아리실, 휴카페		
		1층	서동이 어린이집,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하 1층	보육정보센터 강당, 기계실, 전기실		
개관일	2014.03.11				

다. 운영현황

1) 인력

○ 2025년 6월 30일 기준 청소년사업단의 각 청소년센터의 인력구성은 다음 [표21]과 같음

- 총 정원은 39명, 현원은 34명으로 정원대비 5명이 부족함

[표 21] 청소년센터 인력구성

(단위 : 명)

구분		가좌청소년센터	서구청소년센터	검단청소년센터	연희청소년센터
총계	정원	39	12	7	8
	현원	34	14	7	6
일반직계	정원	28	9	5	6
	현원	25	11	5	4
공무직계	정원	11	3	2	2
	현원	9	3	2	2

자료 : 공단 사업운영계획(경영실적 보고)

2) 프로그램 현황

○ 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사업, 진로체험, 기관연계 및 공유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여가활동, 자치활동, 동아리지원, 국가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봉사활동 등을 지원함

○ 제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디지털 친화성이 높은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증가

-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의 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활동 및 교육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디지털 기반 개선과 함께 진로체험 및 교육지원에 있어서 4차산업 기반의 코딩, AI로봇, 3D프린터, 자율주행 등의 주제를 다루는 활동을 진행

- 또한 사이버 폭력이나 디지털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

○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EM,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플로깅 등과 같이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한 시류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

○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강화를 위해 노인센터, 인천지역 대학교와 청소년들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1·3세대 교류, 재능공유, 공유공간 활용 등을 도모하고 있음

-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창의적인 작업과 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메이커스 Lab을 통해 다양한 장비와 공간을 통한 진로체험, 전문체험 등을 제공
-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된 2023년부터는 활동인원이 급증하였으며,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음(가좌청소년센터는 2023년도까지 진행)

[표 22] 청소년센터별 프로그램 현황(1)

(단위 : 개, 명)

구분		2021 프로그램수 (활동인원)	2022 프로그램수 (활동인원)	2023 프로그램수 (활동인원)	2024 프로그램수 (활동인원)
가좌 청소년 센터	특성화	2(146)	2(336)	2(5,494)	2(5,875)
	진로활동	2(3,356)	3(3,929)	5(8,821)	5(17,329)
	여가활동	2(593)	2(441)	2(502)	2(3,255)
	지역연계	8(993)	14(4,896)	9(6,577)	8(13,708)
	자치활동	4(839)	4(1,290)	5(6,277)	4(5,222)
	자원봉사	1(152)	1(590)	1(861)	2(1,372)
	동아리	4(1,624)	5(2,120)	5(3,993)	4(3,069)
	후기청소년	3(267)	-	-	-
	국가청소년수련활동인증	10(160)	12(187)	11(4,610)	10(153)
	포상제	2(229)	2(184)	2(7,328)	2(8,838)
	비대면 청소년프로그램	7(1,318)	4(541)	2(176)	-
	자율이용	3(3,408)	3(14,471)	2(23,047)	2(27,729)
	홍보활동	2(25)	4(680)	3(680)	3(896)
서구 청소년 센터	특성화사업	-	3(528)	4(7,610)	4(7,270)
	대표행사	5(3,840)	2(6,020)	-	-
	글로벌인재양성	1(66)	-	-	-
	메이커스 Lab'공생'특성화 프로그램	6(1,235)	4(1,040)	3(5,025)	-
	진로활동	10(25,487)	4(37,643)	6(71,725)	15(64,323)
	환경교육프로그램	-	-	7(6,796)	4(9,212)
	비대면프로그램	2(515)	2(698)	-	-
	지역연계	11(1,554)	11(2,612)	13(13,624)	13(15,569)
	자치활동	7(3,821)	8(4,131)	7(4,363)	12(18,183)
	자원봉사	1(1,845)	2(3,335)	3(3,979)	-
	동아리	4(4,362)	5(16,780)	4(6,920)	-
	국가청소년수련활동인증	6(110)	10(159)	10(150)	10(160)
	포상제	2(88)	2(150)	2(7,790)	2(7,175)
	방과후아카데미*	(9,597)	(9,303)	(9,847)	(9,548)
	자율이용	(18,678)	(41,859)	31,512	(22,100)
	홍보	-	-	-	-
	수영장	(20,210)	-	-	-
	운영협의회	-	-	-	2(48)
대관사업	(5,895)	-	-	-	

[표 23] 청소년센터별 프로그램 현황(2)

(단위 : 개, 명)

구분		2021 프로그램수 (활동인원)	2022 프로그램수 (활동인원)	2023 프로그램수 (활동인원)	2024 프로그램수 (활동인원)
검단 청소년 센터	특성화사업	6(2,600)	7(3,634)	7(11,284)	5(3,402)
	비대면프로그램	4(460)	3(380)	-	-
	진로활동	2,520	2(3,020)	2(8,570)	2(11,714)
	지역연계	5(580)	5(530)	8(2,607)	7(9,655)
	공모사업	-	-	-	7(1,422)
	자치활동	5(900)	6(670)	6(795)	5(1,868)
	자원봉사	2(640)	2(416)	2(710)	2(2,133)
	동아리	4(2,735)	4(1,594)	5(2,270)	4(5,431)
	국가청소년수련활동인증	8(200)	6(100)	6(80)	6(67)
	포상제	2(220)	2(100)	2(200)	2(5,051)
	자율이용	3(7,750)	3(11,122)	3(13,945)	2(14,869)
	홍보	-	532	-	-
연희 청소년 센터	특성화	5(863)	5(500)	2(2,078)	2(1,999)
	진로활동	2(3,698)	2(4,178)	3(15,701)	7(21,638)
	비대면프로그램	6(1,239)	4(1,077)	2(2,078)	-
	여가활동	-	-	4(536)	7(1,456)
	지역연계	12(4,324)	11(4,189)	13(9,788)	9(5,663)
	자치활동	5(1,220)	5(1,083)	6(902)	3(532)
	자원봉사	2(395)	2(401)	2(500)	4(1,025)
	동아리	3(1,607)	4(3,192)	5(4,791)	4(6,398)
	국가청소년수련활동인증	10(271)	8(233)	9(196)	9(206)
	포상제	1(266)	2(325)	2(424)	1(1,408)
	자율이용	2(2,842)	3(9,294)	2(4,216)	2(11,203)
	홍보	-	-	-	-

자료 : 공단 내부자료, 재구성.

-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1년~2024년의 총 이용자 수는 유료 1,105,507명, 무료 667,964명, 상시이용 323,237명으로 총 2,096,708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524,177명임
-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1년~2022년과 2023년~2024년의 이용자의 수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집합에 규제가 완화된 2023년 이용자의 수가 전년대비 61.11% 증가함
 - 2021년~2022년의 연평균 이용자 수는 247,282.5명, 2023년~2024년의 연평균 이용자 수는 559,121.5명으로 약 2.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 청소년센터 이용자 현황(2021-2024)

(단위 : 명)

구분	계	프로그램		상시이용	
		유료	무료		
총 계	2,096,708	1,105,507	667,964	323,237	
계	150,390	63,567	57,577	29,246	
2021	가좌청소년센터	12,960	3,968	5,736	3,256
	서구청소년센터	105,546	50,025	36,843	18,678
	검단청소년센터	15,149	5,736	4,843	4,570
	연희청소년센터	16,735	3,838	10,155	2,742
계	344,175	174,121	96,240	73,814	
2022	가좌청소년센터	29,806	4,172	12,710	12,924
	서구청소년센터	263,175	159,481	61,838	41,856
	검단청소년센터	26,622	6,255	9,219	11,148
	연희청소년센터	24,572	4,213	12,473	7,886
계	554,486	334,002	138,102	82,382	
2023	가좌청소년센터	70,684	26,954	20,703	23,027
	서구청소년센터	388,498	264,579	92,407	31,512
	검단청소년센터	46,359	21,047	7,945	17,367
	연희청소년센터	48,945	21,422	17,047	10,476
계	573,757	350,666	150,208	72,883	
2024	가좌청소년센터	88,220	30,512	30,043	27,665
	서구청소년센터	373,047	272,381	78,566	22,100
	검단청소년센터	55,252	23,150	17,613	14,489
	연희청소년센터	57,238	24,623	23,986	8,629

자료 : 공단 내부자료.

-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진흥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센터는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가좌청소년센터는 댄스, 연극, 밴드, 배구 등의 청소년 동아리를 조직하여 정기회의, 연금, 공연활동 등을 지원하며, 131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음
 - 서구청소년센터는 댄스, 미디어콘텐츠 분야 등의 동아리를 조직하여 연습, 대회 및 공연 참가를 지원하며 177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음
 - 검단청소년센터는 댄스, 뮤지컬, 밴드, 치어리딩, 환경분야의 동아리를 조직하여 연습과 활동을 지원하며 179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음
 - 연희청소년센터는 댄스 동아리의 비중이 높으며, 그 외 풋살 등의 동아리를 조직하여 연습과 축제 참가 등을 지원하며 242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음

[표 25] 청소년센터 동아리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동아리 수	구성인원	활동내용
가좌청소년센터	20	131	문화예술(댄스, 연극, 밴드), 체육(배구), 정기회의, 연습, 공연활동을 통한 자기개발
서구청소년센터	24	177	정기연습(문화예술분야 입시), 정기연습 및 대회·공연·봉사 참가 등 미디어콘텐츠 분야 작품 제작 및 발표회 등
검단청소년센터	20	179	문화예술(밴드, 댄스, 뮤지컬), 치어리딩, 환경 분야 활동
연희청소년센터	34	242	문화예술(댄스), 체육(풋살),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댄스 연습 K-POP 음악 댄스 연습 및 쇼츠 촬영

자료 : 공단 내부자료, 재구성.

3) 경영실적 현황

○ 과거 4년간(2021~2024년) 청소년센터 사업수입 및 경비는 다음 [표26]과 같음

[표 26] 청소년센터 부문 사업수입 및 경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사업수입	전체	200,988,632	172,351,056	191,631,560	166,702,740
	가좌청소년센터	44,194,690	34,906,820	39,651,420	43,573,010
	서구청소년센터	68,490,742	58,790,980	61,892,960	69,575,590
	검단청소년센터	44,534,920	35,822,720	47,262,920	28,552,280
	연희청소년센터	43,768,280	42,830,536	42,824,260	25,001,860
경비	전체	600,721,327	433,886,040	585,555,230	593,726,062
	가좌청소년센터	166,091,020	148,526,600	163,964,070	172,132,552
	서구청소년센터	215,518,847	154,107,620	193,110,570	202,716,200
	검단청소년센터	108,716,880	85,800,380	97,736,070	101,526,450
	연희청소년센터	110,394,580	45,451,440	130,744,520	117,350,860

자료 : 공단 사업운영계획(경영실적 보고).

3.2. 구립도서관

가. 사업근거

- 제 4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24~2028)
- 제 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
- 도서관법 제 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시설 및 자료 현황

1) 시설현황

- 서구 관내에 있는 구립 도서관은 총 6개관으로 검암도서관, 단봉늘봄도서관, 검단도서관, 심곡도서관, 석남도서관, 신석도서관이 있으며, 검단신도시 내 새로운 도서관이 2026년 개관 예정임
- 유아·동 및 일반 대상층을 위한 주제별 도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정보나눔터, 스마트도서관(검암도서관), 영어도서 전용 ABC놀이터(심곡도서관), 문학전용 문학터(검단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단봉늘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배움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7] 서구 구립도서관 현황(1)

구분	시설현황				비고
검암	소재지	검암로 20번길 20			
	규모	지하 1층~지상 3층 대지면적 : 1,760.2㎡ 연 면 적 : 2,998.31㎡			
	주요시설	B1	전기/기계실		
		1F	통합데스크, 꿈자람터(269.90m2), 어울림터(136.45m2)		
		2F	열림터(303.86m2 -정보나눔터 10석), 사무실		
		3F	열린정원(178.40m2), 배움터(45.60m2), 쉼터		
	좌석수	350석			
개관일	2017.06.07	수탁일	2017.02.24		
단봉늘봄	소재지	오동로 25			
	규모	지하1층~지상4층 대지면적 : 1,098.86㎡ 연면적 : 2,203.32㎡			
	주요시설	B1	전기/기계실, 우수저장고		
		1F	도움마루, 늘봄라운지(40m2), 가족심마루(10.1m2), 다함께돌봄센터		
		2F	모두의서재(380.3m2), 물입서재(17.04m2)		
		3F	배움마루(90.32m2), 채움마루(166.4m2), (사무실)		
		4F	누리마루(96.39m2), 늘봄책들(51.48m2)		
좌석수	190석				
개관일	2025.02.20.	수탁일	2024.09.01.		
검단	소재지	완정로 92번길 18			
	규모	지하1층~지상3층 대지면적 : 14,760.80㎡ 연면적 : 1,665.28㎡			
	주요시설	B1	어울림터(113m2), 기계실, 통신장비실		
		1F	통합데스크, 꿈터(113m2), 자람터(216m2)		
		2F	열림터(135m2), 집중독서공간(216m2)		
		3F	문학터(216m2), 모임터(20m2), 쉼터, 사무실		
	좌석수	265석			
개관일	2004.07.21	수탁일	2005.01.01		

[표 28] 서구 구립도서관 현황(2)

구분	시설현황				비고
심곡	소재지	심곡로 31			
	규모	지상1층~지상4층 대지면적 : 764.70㎡ 연면적 : 1,347.68㎡			
	주요시설	1F	전기/기계실, 어울림터(64.17m2)		
		2F	꿈터(134.55m2), 자람터(132.84m2), 사무실		
		3F	열림터(135.12m2), 정보나눔터(9석)(23.76m2)		
		4F	ABC놀이터(72.96m2), 배움터(52.54m2), 심터		
	좌석수	237석			
개관일	2010.05.12	수탁일	2010.04.21		
석남	소재지	서달로 137번길 6-12			
	규모	지하1층~지상4층 대지면적 : 839.90㎡ 연면적 : 1,455.90㎡			
	주요시설	B1	전기/기계실		
		1F	꿈자람터(144m2), 정보나눔터(30석)(90.0m2)		
		2F	열림터(162m2), 배움터(26m2), 사무실		
		3F	자유열람실(120석), (162m2) 어울림터(90m2)		
		4F	창고, 물탱크실		
좌석수	198석				
개관일	2008.01.30	수탁일	2008.01.01		
신석	소재지	염곡로 299			
	규모	지상1층~지상4층 대지면적 : 1,007㎡ 연면적 : 1,668.73㎡			
	주요시설	1F	기계실, 전기실		
		2F	꿈터(46.35m2), 자람터(149.57m2), 사무실		
		3F	열림터(192.45m2), 정보나눔터(20석)(75.49m2)		
		4F	어울림터(96.39m2), 배움터(46.36m2), 휴게실		
	좌석수	147석			
개관일	2012.02.09	수탁일	2012.01.01		

2) 자료 현황

- 자료현황을 살펴보면, 도서는 총 346,490권의 자료가 있으며, 전자도서 12,636종, 비도서(DVD) 11,408점, 정기간행물 219종을 구비하고 있음
- 도서는 유아동 도서 86,216권, 일반도서 112,099권, 영어원서 145,194권, 스마트도서관 2,981권
- 전자도서의 경우 검암도서관에서 구입 및 관리하고 있으며, 6개의 구립도서관에서 통합 이용 가능하며 E-Book 20,794종, Audio-Book 1,228종을, 정기간행물은 신문 76종, 잡지 143종을 구비하고 있음

[표 29] 구립도서관 자료현황

자료현황	계	검암	단봉늘봄	검단	심곡	석남	신석	
도서 (권)	계	346,490	58,626	40,249	58,154	59,211	61,398	68,852
	유아동도서	86,216	10,859	8,463	19,412	18,731	13,948	14,803
	일반도서	112,099	13,676	12,745	15,458	21,469	20,060	28,691
	영어원서	145,194	31,110	19,041	23,284	19,011	27,390	25,358
	스마트도서관	2,981	2,981	0	0	0	0	0
전자 도서 (종)	계	12,636	*구립도서관 통합이용(검암도서관 구입 및 관리)					
	E-Book	20,794	20,794					
	Audio-Book	1,228	1,228					
비도서 (DVD) (종)	계	11,408	1,455	0	0	3,051	4,177	2,725
정기 간행물 (종)	계	219	34	35	43	37	40	30
	신문	76	11	12	13	15	13	12
	잡지	143	23	23	30	22	27	18

자료 : 공단 내부자료.

- 주제별 도서현황을 살펴보면, 총 361,134권의 도서 중 문학분야 160,293권, 사회과학 48,494권, 자연과학 29,559권, 언어 28,485권, 역사 26,703권 등이 구비되어 있음

[표 30] 구립도서관 도서현황

(단위 : 권)

구분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361,134	15,494	15,883	5,733	48,494	29,559	21,556	11,934	28,485	160,293	26,703
검암	58,626	2,879	3,243	1,116	8,836	4,317	5,301	2,217	1,582	25,276	3,859
단봉	40,249	2,157	1,643	623	5,213	3,819	2,187	1,441	1,215	18,965	2,986
검단	58,154	1,952	2,530	866	7,383	2,758	3,313	1,395	8,103	26,157	3,697
심곡	76,855	2,743	2,648	1,139	9,547	7,523	3,618	2,164	6,722	35,214	5,537
석남	61,398	2,886	2,962	978	7,588	4,495	3,022	2,643	5,959	26,258	4,607
신석	68,852	2,877	2,857	1,011	9,927	6,647	4,115	2,074	4,904	28,423	6,017

자료 : 공단 내부자료.

- 특수도서는 총 37,884권으로 영어원서 32,094권, 기타 외국도서 1,657로 영어원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등 독서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도서 1,980권, 큰글자도서 2,153권을 구비하고 있음

[표 31] 구립도서관 특수도서현황

(단위 : 권)

구분	주제	계	국외도서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다문화	영어원서		
계		37,884	1,657	32,094	1,980	2,153
검암	동남아시아	818	423	-	-	395
단봉	-	120	-	-	-	120
검단	중국	8,251	146	7,084	610	411
심곡	전 세계	18,253	519	16,972	444	318
석남	일본	5,624	193	4,635	283	513
신석	러시아	4,818	376	3,403	643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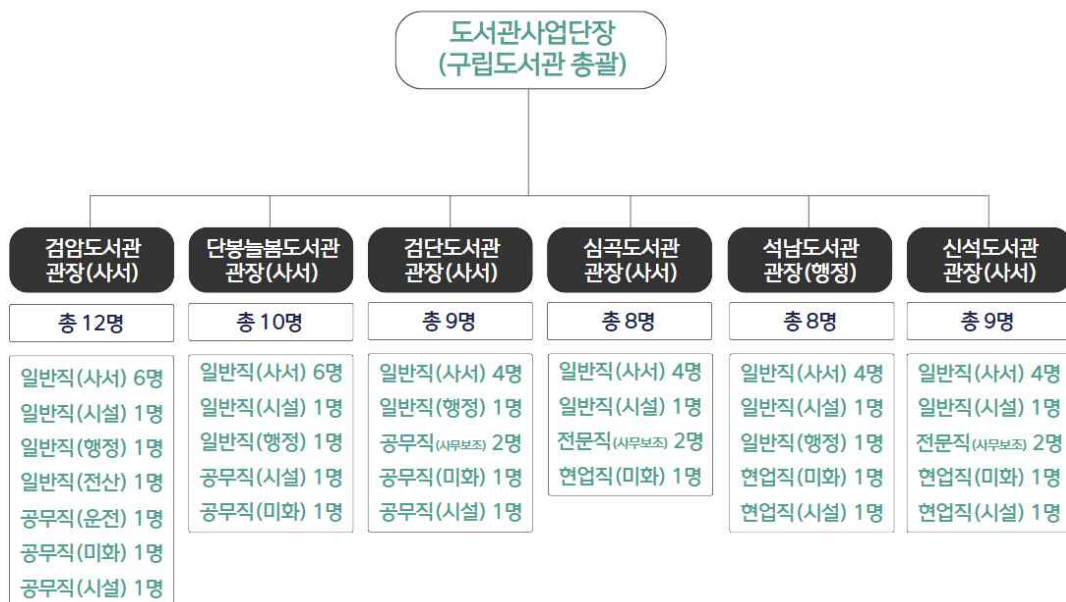
자료 : 공단 내부자료.

다. 운영현황

- 서구 관내에 있는 구립도서관 6개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휴관하고 있음
- 현재 구립도서관은 2020년 12월 15일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기간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임. 단, 2025년 2월 개관한 단봉늘봄도서관의 수탁기간은 2024년 09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임

1) 인력

- 서구 관내에 있는 구립도서관의 인력을 살펴보면, 정원 55명에 도서관사업단장을 포함하여 현원 57명임
 - 검암도서관은 현원 총 12명이며 일반직 9명 중 사서 6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
 - 단봉늘봄도서관은 현원 총 10명이며 일반직 8명 중 사서 5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
 - 검단도서관은 현원 총 9명이며 일반직 5명 중 사서 5명, 공무원 4명 중 사서 1명이 포함됨
 - 심곡도서관은 현원 총 8명이며 일반직 5명 중 사서 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
 - 석남도서관은 현원 총 8명이며 일반직 6명 중 사서 4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
 - 신석도서관은 현원 9명이며 일반직 5명 중 사서 5명, 공무원 4명 중 사서 1명이 포함됨



[그림 2] 구립도서관 조직도

○ 2025년 6월 말 기준, 57명의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일반직 39명, 전문직 8명, 현업직 10명으로 구성

- 단봉늘봄 개관을 앞둔 2024년에 10명의 직원이 증가함

- 일반직은 단장 1명, 사서 28명, 행정 4명, 기술 5명, 전산 1명으로 구성되며, 운전 및 사무보조 등의 전문직 8명,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현업직 10명으로 구성됨

[표 32] 구립도서관 정원 및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총괄	검암	단봉늘봄	검단	심곡	석남	신석
계	55/57(29)	1/1	12/12(6)	9/10(5)	9/9(5)	7/8(4)	8/8(4)	9/9(5)
일반직	37/39(27)	1/1	9/9(6)	7/8(5)	5/5(4)	4/5(4)	6/6(4)	5/5(4)
공무직 (운전/사무보조/ 시설관리)	8/8(2)	0/0	1/1	1/1	2/2(1)	2/2	0/0	2/2(1)
공무직(시설)	4/4	0/0	1/1	0/0	1/1	0/0	1/1	1/1
공무직(그린)	6/6	0/0	1/1	1/1	1/1	1/1	1/1	1/1

자료 : 공단 내부자료.

[표 33] 구립도서관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일반직					전문직	현업직	비고
		단장	사서	행정	기술	전산			
2008년	16	1	7	-	1	-	5	2	석남개관
2009년	16	1	7	-	1	-	5	2	
2010년	24	1	10	1	1	-	8	3	심곡개관
2011년	24	1	11	-	1	-	8	3	
2012년	33	1	14	1	2	-	10	5	신석개관
2013년	33	1	13	2	2	-	10	5	
2014년	33	1	13	2	2	-	10	5	
2015년	34	1	13	3	3	-	9	5	
2016년	34	1	13	3	3	-	9	5	
2017년	44	1	17	5	4	-	9	8	검암개관
2018년	46	1	18	4	4	1	9	9	
2019년	44	1	17	6	3	1	7	9	
2020년	46	1	18	7	3	1	7	9	
2021년	44	1	20	5	3	-	6	9	
2022년	47	1	21	5	3	1	7	9	
2023년	47	1	22	4	3	1	7	9	
2024년	57	1	28	4	5	1	8	10	
2025년	57	1	28	4	5	1	8	10	단봉개관

자료 : 공단 내부자료.

- 정원 외 지원 인력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전일제 근무자와 초단시간 근무하는 운영보조로 구분
 - 국비와 구비 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개관시간 연장 근무자는 17명,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운영보조는 평일 18명(236시간), 주말 6명(84시간)으로 구성됨
 - 개관시간 연장 근무자는 주 40시간 근무하며, 2025년도 인건비 593,527천 원이 책정됨
 - 운영보조 근무자는 주 12시간~14시간 근무하며 2025년도 인건비 191,360천 원이 책정됨

2) 이용자 현황

가) 회원현황

- 서구 관내 6개소의 회원 수는 55,999명으로, 서구 인구 대비 8.7%임

[표 34] 구립도서관 회원현황

(단위 : 명)

계	검암	단봉늘봄	검단	심곡	석남	신석
55,999	16,658	2,778	18,568	6,969	6,411	4,615

자료 : 공단 내부자료.

나) 이용실적

- 서구 관내 구립도서관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총 이용자수는 3,683,843명, 총 대출권수는 2,497,963권임
 - 복사출력, 사물함이용 등의 유료이용자 수는 258,855명, 대출 등을 위한 방문자, 독서행사 등의 무료이용자 수는 3,425,255명임
 - 검암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1,143,029명, 대출 권수 649,790권으로 다른 구립도서관에 비해 이용자 수와 대출권 수가 많았음

[표 35] 구립도서관 이용실적

(단위 : 명, 권)

구 분		사 업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용자수		계	3,683,843	704,920	766,470	866,415	800,969
		유 료	258,855	36,207	42,855	45,436	40,464
		무 료	3,425,255	668,713	723,615	820,979	760,505
대출권수			2,497,963	577,411	544,777	538,315	521,750
검암 도서관	이용자수		1,143,029	197,518	226,360	275,222	289,651
	유료	복사출력, 사물함 등	62,148	10,176	14,875	14,727	14,603
	무료	방문자, 독서행사	1,080,881	187,342	211,485	260,495	275,048
	대출권수		649,790	146,423	137,896	140,262	146,679
단봉 늘봄 도서관	이용자수		74,317	-	-	-	-
	무료	방문자, 독서행사	74,317	-	-	-	-
	대출권수		54,944	-	-	-	-

자료 : 공단 내부자료.

[표 36] 구립도서관 이용실적

(단위 : 명, 권)

구 분		사 업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검단 도서관	이용자수		823,898	187,918	195,891	229,678	141,815
	유료	복사출력, 사물함 등	29,296	5,879	7,508	8,718	5,165
	무료	방문자, 독서행사	794,602	182,039	188,383	220,960	136,650
	대출권수		538,376	143,696	133,404	132,767	83,142
심곡도 서관	이용자수		713,955	140,966	151,332	168,156	168,767
	유료	복사출력, 사물함 등	16,918	3,174	3,721	3,727	4,186
	무료	방문자, 독서행사	697,037	137,792	147,611	164,429	164,581
	대출권수		510,924	117,956	114,275	109,294	114,991
석남 도서관	이용자수		494,054	102,403	111,147	108,340	116,695
	유료	복사출력, 사물함 등	42,074	10,652	9,001	9,371	9,056
	무료	방문자, 독서행사	451,980	91,751	102,146	98,969	107,639
	대출권수		355,723	78,954	73,526	73,616	86,794
신석 도서관	이용자수		360,273	76,115	81,740	85,019	84,041
	유료	복사출력, 사물함 등	33,835	6,326	7,750	8,893	7,454
	무료	방문자, 독서행사	326,438	69,789	73,990	76,126	76,587
	대출권수		388,206	90,382	85,676	82,376	90,144

자료 : 공단 내부자료.

다) 도서 대출권수

- 2021년~2024년 연도별 대출권수를 살펴보면, 총 대출권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도서와 스마트도서관의 대출권수를 제외한 도서 대출권수는 2021년 577,411권, 2022년 544,777권, 2023년 538,315권, 2024년 521,750권으로 조사됨
 - 2024년 기준, 전년도 대비 3.08% 감소하였으나 검단도서관을 제외한 4개관은 평균 약 9%의 증가율을 보임
 - 검단도서관은 시설노후화 개선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대출권수가 37.38% 감소한 것으로 보여짐

[표 37] 구립도서관 대출권수 현황

(단위 : 권)

구 분	2021	2022	2023	2024
계	577,411	544,777	538,315	521,750
검암도서관	146,423	137,896	140,262	146,679
단봉늘봄도서관	-	-	-	-
검단도서관	143,696	133,404	132,767	83,142
심곡도서관	117,956	114,275	109,294	114,991
석남도서관	78,954	73,526	73,616	86,794
신석도서관	90,382	85,676	82,376	90,144
전자도서	123,375	85,532	79,147	82,715
스마트도서관	8,740	5,955	6,890	22,258

자료 : 공단 내부자료.

- 2025년도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6세~18세의 학령기 연령이 많은 서구의 특성상, 유아동도서의 대출빈도가 높았음

[표 38] 구립도서관 사업별 실적(2025)

구 분	계	검암	단봉늘봄	검단	심곡	석남	신석
합 계	327,281	78,530	54,944	56,938	54,408	42,833	39,628
도서	소 계	270,764	67,886	48,049	49,922	43,754	32,179
	유아동도서	168,960	43,363	31,554	34,891	22,690	17,835
	일반도서	93,003	24,523	16,495	15,031	12,263	14,344
	영어원서	8,801	-	-	-	8,801	-
전자도서(계)	45,384	8,539	5,555	5,655	8,545	8,545	8,545
스마트도서관(계)	11,133	2,105	1,340	1,361	2,109	2,109	2,109

자료 : 공단 내부자료.

- 도서관 및 독서생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호대차서비스, 스마트 도서관, 북박스, 북드림을 실시

[표 39] 구립도서관 기타 프로그램

구 분	상호대차 서비스	스마트도서관 (예약대출기)	북박스	북드림
시행	2018.01.~	2018.01.~	2020.10.~	2020.6.~
대상 및 장소	구립도서관 6개소 작은도서관 1개소	총 9개소		정보소외계층 대상
	검암, 단봉늘봄, 검단, 심곡, 석남, 신석, 으뜸골작은도서관	검단사거리역 서구청역 검암역 청라3동 가정역	도담공원 (예약대출기) 속 공원 블로체육센터 (예약대출) 평생학습관	완정역(2,3번출구) 검암역(환승통로) 가정역(4번출구) 석남역(B2환승통로)
내용	구립도서관 간 도서 대출서비스	365일 24시간 열린 무인 스마트도서관	무인도서보관함 활용 도서 대출반납	구립도서관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

자료 : 공단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상호대차서비스는 28,519명, 1일 평균 95명, 대출권수는 37,284권, 1일 평균 124권임
- 2024년 기준, 스마트도서관의 이용자수는 10,760명, 1일 평균 29명, 대출권수는 22,258권, 1일 평균 61권임
- 2024년 기준, 북박스의 이용건수는 17,676건, 1일 평균 74권, 대출권수는 29,571권, 1일 평균 124권임
- 북드림은 2021년 3월부터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신청 건수는 823건, 대출권수는 3,505권임

3) 독서문화행사

- 독서문화행사는 통합행사, 정기행사, 특화행사, 기관연계, 공모사업으로 구분됨
 - 연평균 220.75개의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서진흥, 정보활용, 문화예술, 평생학습 등의 특화행사의 빈도가 높음
 - 도서관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성인, 단체(1·3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돌봄센터 이용아동)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기념행사, 자체동아리지원, 독후활동, 견학프로그램, 지역 연계,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도서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공모사업은 개관시간 연장운영과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큰글자책보급지원사업,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책(QR), 평생학습프로그램, 북스타트, 재능기부 강연 등을 진행

[표 40] 구립도서관 독서문화행사

(단위 : 회)

구분	계	검암	단봉늘봄	검단	심곡	석남	신석
2021	계	135	24	-	35	23	28
	정기행사	10	2	-	2	2	2
	특화행사	109	19	-	29	18	22
	자료실행사	16	3	-	4	3	4
2022	계	210	41	-	49	30	47
	정기행사	6	2	-	1	1	1
	특화행사	156	30	-	39	22	35
	보조금	48	9	-	9	7	11
2023	계	291	50	-	89	41	48
	정기행사	9	2	-	2	2	1
	특화행사	186	35	-	44	28	34
	보조금	66	13	-	13	11	13
2024	계	247	38	-	40	43	59
	정기행사	9	2	-	1	2	2
	특화행사	148	21	-	22	29	32
	기관연계	40	5	-	9	3	13
	공모사업	50	10	-	8	9	12

자료 : 공단 내부자료.

4) 경영실적 현황

○ 도서관 부문 경영실적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도서관 사업수입은 대관료, 복사출력, 사물함, 기타 잡수입을 포함함

[표 41] 도서관 부문 사업수입 및 경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사업수입	전체	12,179,778	16,472,709	18,638,340	16,339,970
	검암도서관	2,958,960	4,741,390	6,173,930	5,318,370
	검단도서관	2,371,210	4,137,860	4,567,080	3,798,900
	심곡도서관	1,047,710	1,482,200	1,651,660	1,362,980
	석남도서관	3,594,898	3,443,749	3,525,790	3,326,600
	신석도서관	2,207,000	2,667,510	2,719,880	2,533,120
경비	전체	560,800	491,187	564,812	1,508,094
	검암도서관	203,068	168,262	200,403	626,216
	검단도서관	91,954	88,365	95,888	212,874
	심곡도서관	96,125	77,723	92,219	219,631
	석남도서관	87,119	86,309	98,350	252,355
	신석도서관	82,534	70,528	77,952	197,018

자료 : 공단 사업운영계획(경영실적 보고).

라. 신규도서관

- 점단신도시 생활 SOC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이 2026년 개관 예정임
- 시설개요
 - 위치 : 서구 당하동 1318-4, 1318-5번지
 - 규모 : 대지면적 4,110㎡, 연면적 7,557.46㎡(도서관 연면적은 3,130.5㎡에 해당)
지하 1층~지상 4층
 - 준공시기 : 2026년 1월 예정

[표 42] 신규도서관 개요

구분	공간구성	연면적(㎡)	비고
소계		7,557.46	
지상 4층	건강지원센터	1,018.75	
지상 3층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1,284.49	동아리실, 세미나실
지상 2층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1,289.25	일반열람실, 디지털열람실
지상 1층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594.46	유아동열람실
지하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2,370.51	



[그림 3] 조감도 및 건물단면도

III. 위탁 적정성 검토

- ① 대안별 적정성 검토
- ② 수지 분석(경제적 타당성)
- ③ 인력수요 검토
- ④ 위탁 종합 판단 및 제언

III. 위탁 적정성 검토

1. 대안별 적정성 검토

1.1. 개요

- 본 용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토 기준을 준용하여 대안별 적정성을 검토함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해서는 안 된다.

[표 43] 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및 방식

검토 기준	검토 방식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 타당성 검토 • 인천광역시 유사 사무(시설) 운영 주체 검토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복지 증진 기여 여부 • 지역경제 기여 여부 • 민간영역 침해 여부(시장성 테스트)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지 분석(경제적 타당성)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연혁(업력) • 법적 조건 충족 여부 • 공모사업 실적
성과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별 외부평가(경영평가) 실시 내용, 결과 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감독 기관 존재 여부 • 자체 감독 기능 여부
책임행정의 보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행정 권한 여부 • 책임경영 체계 구축 여부

1.2.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가. 법률적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 사무위탁 관련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등에서 명시하고 있음

1) 정부조직법

-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그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제 6조에서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 조사 : 자연환경조사, 도로교통량 조사, 통계조사 등
 - 검사·검정 : 특정물질의 처리확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재분류 신체검사 등
 - 관리업무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도서관, 박물관, 환경시설 등 시설물 관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관리 등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명시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민주적

으로 발전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구역, 기능, 사무, 조례와 규칙,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조례나 규칙에 의해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업소나 출장소,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법」 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또는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사업, 설치, 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예산회계 결산 및 감독,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2조는 지방공기업의 설치를 통해 경영 또는 운영가능한 적용범위를 규정함
- 또한 동법 제2조2에서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해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을 적용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운영에 있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를 주요한 기본원칙으로 명시함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1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권한을 정함

- 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제3조에서는 위임 및 위탁에 있어 수임기관의 능력여부 점검과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명시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시 인력,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 「지방공기업법」 제76조1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공단은 제20조에 의해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으며, 제22조에 의해 지역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함
- 공단은 서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도서관리운영과 체육·청소년시설물 관리운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제32조)

제20조(윤리경영) 공단은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적 책임경영)

- ① 공단은 지역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제23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수 있다.(개정 2009.12.28, 개정 2015.10.7)

1. 쉼매장 관리운영
2. 체육·청소년시설물 관리운영(개정 2015.10.7, 2017.7.12)
3. 노인복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 (개정 2010.10.6, 2015.10.7)
4.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5.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운영
6. 도서관 관리 운영
7.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사업<신설 2015.10.7>
8. 도로(도로부속 시설물 포함)·하수 및 하천·전기 사무<신설 2015.10.7>
9. 그 밖의 사업(개정 2015.10.7)

제32조(감독)

-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전문직 및 현업직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1.>
3. 임직원의 보수(연봉, 복리후생 포함) 및 명예(조기)퇴직에 관한 사항<개정 2001. 7.12, 2020.12.21.>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1.>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폐지가 요구되거나 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사항 <신설 2020.12.21.>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7)[중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21.>]

나. 운영기관 현황 검토

1) 청소년시설 부문

-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기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민간 직영시설 및 유스호스텔 제외) 남동청소년문화의집(남동구 직영)을 제외한 전 시설이 공단, 재단 등에 위탁하고 있음

[표 44]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시설명	시설유형	설립주체	운영형태	운영기관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시립	위탁	인천시설공단
서구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구립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구립	위탁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구립	위탁	성산청소년효재단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구립	위탁	성산청소년효재단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구립	위탁	인천부평구문화재단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구립	위탁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중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구립	위탁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강화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군립	위탁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연희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검단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가좌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계양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위탁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남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직영	남동구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위탁	인천부평구문화재단
연수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위탁	푸른나무재단
강화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군립	위탁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백령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군립	위탁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자료 : 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

2) (구립)도서관 부문

○ 인천광역시 내 지자체가 설립한 도서관들의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음

[표 45] 인천광역시 도서관 운영현황(1)

시설명	설립주체	운영방식	운영기관
갈산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검단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검암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꿈벗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중구문화재단
내가도서관	지자체	직영	
동양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백령도서관	지자체	직영	
부대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삼산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서운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서창도서관	지자체	직영	
석남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래도서관	지자체	직영	
송림도서관	지자체	직영	
신석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심곡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용비도서관	지자체	직영	
임학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작전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청천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효성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학나래도서관	지자체	직영	
해돋이도서관	지자체	직영	
강화군립도서관	지자체	직영	
남동논현도서관	지자체	직영	
동춘나래도서관	지자체	직영	
선학별빛도서관	지자체	직영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표 46] 인천광역시 도서관 운영현황(2)

시설명	설립주체	운영방식	운영기관
연수꿈담도서관	지자체	직영	
연수청학도서관	지자체	직영	
지혜의숲도서관	지자체	직영	
함박비류도서관	지자체	직영	
이름청소년도서관	지자체	직영	
인천광역시 마전도서관	지자체	직영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지자체	위탁	(사)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인천광역시립 수봉도서관	지자체	위탁	(사)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인천광역시립 영종도서관	지자체	위탁	(사)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연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지자체	직영	
인천광역시 영종하늘도서관	지자체	직영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서관	지자체	직영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	지자체	직영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양도서관	교육청	직영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도서관	교육청	직영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	교육청	직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교육청	직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도서관	교육청	직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안도서관	교육청	직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앙도서관	교육청	직영	
인천광역시교육청 화도진도서관	교육청	직영	
인천광역시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지자체	직영	
부개어린이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기적의 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별똥별 어린이도서관	지자체	직영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지자체	위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교육청 평생학습관	교육청	직영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다. 대안 설정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 가능
 -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업소, 법인, 단체 등에 위임 가능하도록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따라 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사업 수행이 가능함
- 청소년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설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시와 함께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지방공단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석함(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034(여성가족부 질의회신), 2017.03.06.)

[표 47] 법령에 따른 대안설정

구분	내용
정부조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에 의거,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가능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 가능
지방자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통해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업소, 법인, 단체 등에 위임 가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3, 제11조 등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지방공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설치를 통해 경영 또는 운영가능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을 수탁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의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도서관리운영과 청소년 시설물 관리운영의 사업 수행에 가능하며,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에 대한 감독 의무를 명시
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3조에 의거, 공공도서관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에 의거 지자체장은 청소년수련시설 1개 이상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제16조에 의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운영주체 현황 검토 시, 지자체가 건립한 도서관 중에서 민간위탁 사례는 없으며, 단위시설 기준으로 직영 63.0%, 위탁은 37.0%로 나타남

[표 48]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현황

구분	빈도	비율
직영	34	63.0%
위탁	20	37.0%
민간	0	0.0%
합계	54	100.0%

- 위탁한 시설 20개소를 통제하여 살펴보면, 문화재단 7개소, 시설관리공단 5개소, (계양구)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5개소, (사)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3개소로 나타남

[표 49]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기관 현황

구분	빈도	비율
문화재단	7	35.0%
시설관리공단	5	25.0%
(계양구)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5	25.0%
(사)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3	15.0%
합계	20	100.0%

- ‘문화재단’에 도서관 등을 위탁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고 인천 서구에는 ‘인천서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임
-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정관」 제4조(사업)에는 청소년센터,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표 50] 인천서구문화재단 정관 및 관련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정관」 제4조(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회관 운영·관리 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관리 3.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4.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시행 5.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구 문화대학 운영) 7.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9.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p>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교육사업 3.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4. 문화 복지 사업 5. 지역문화진흥 사업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하는 사업 7.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2 각 호의 사업 8.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다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추가 사무로서 이에 대한 위탁이 가능한 점,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도서관법」 제3조1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이 포함되고 청소년센터(문화의집)의 일부 사업(기능)은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을 목적으로 실행되므로 이는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문화재단을 대안으로 검토함
- 또한 대상 사무의 위탁·대행 적정성은 별도 법인이나 지방공기업 설립을 통해서가 아니므로 사무 위탁의 대상은 ①시설관리공단(기존 운영주체), ②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설정함

(참고)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가. 공공성·안정성

1)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기여 여부

○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기여 여부는 관리방식 대안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51]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기여 여부

구분	검토 의견	공단	재단
주민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센터는 지역사회 밀착형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가족 참여문화 활성화, 복지 증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진로·직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제공됨 • 구립도서관은 주민들의 개방형 공유공간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
지역경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에 따라 이용 인원의 증가 및 해당 시설 인근의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사회 및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공단 및 재단은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활성화 및 이용인원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 예상되며, 재정투입 비용 감소를 위한 운영관리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 	◎	◎

2) 민간영역 침해 여부(시장성 테스트)

- 청소년센터 및 도서관 사업 모두 특성상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 및 마찰 등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시장성 테스트 결과, 운영관리 사업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항목에 해당됨

[표 52] 시장성 테스트 검토항목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아래의 기준 중 1개 이상 만족 시 적정사업에 해당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 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1.4.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거, 2000년 11월 28일 설립되었으며, 2003년 가정동 청소년문화의집(現 가좌청소년센터), 2005년 검단도서관 수탁을 시작으로 청소년센터 4개소, 도서관 6개소를 수탁·운영하고 있음

[표 53] (공단)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수탁 현황

도서관	청소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01 검단도서관 수탁 • 2007. 12 석남도서관 수탁 • 2010. 05 심곡어린이도서관 개관 • 2012. 01 신석도서관 수탁 • 2017. 02 검암도서관 수탁 • 2025. 02 단봉늘봄도서관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11 가정문화의집 수탁 • 2005. 11 청소년수련관 수탁 • 2008. 11 연희문화의집 수탁 • 2009. 01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개관 • 2019. 08 가좌청소년센터 수탁

- 다음 표의 공모사업과 대외성과는 공단의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운영 업력, 축적된 전문지식 등에서 파생된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됨

[표 54] 공단 공모사업 및 대외성과

구분	공모사업	대외성과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 23건, 사업비 460,596천 원 확보 • 청소년센터 : 24건, 사업비 302,041천 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시설 선정(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 운영기관 선정(여성가족부) • 서구 꿈드림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여성가족부) • 제14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국립장애인도서관) • 독서경영 우수직장(문화체육관광부)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 54건, 사업비 665,972천 원 확보 • 청소년센터 : 39건, 사업비 466,812천 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경영 우수직장 “7년 연속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사업단 교육기부(문화체육관광부) • 우수기관 선정(교육부)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 88건, 사업비 2,744,067천 원 확보 • 청소년센터 40건, 301.340천 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 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 터전(여성가족부)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 27건, 사업비 147,083천 원 확보 • 청소년센터 : 34건, 456,027천 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예방 유공포상(교육부장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우수기관(여성가족부) •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여성가족부)

*도서관은 당해연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작성, 청소년센터는 사업실적의 공모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또한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목적은 서비스 대상인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 구현에 있음을 주지할 때, 두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첨부함(※두 운영주체 사업·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결과는 측정 방식이 달라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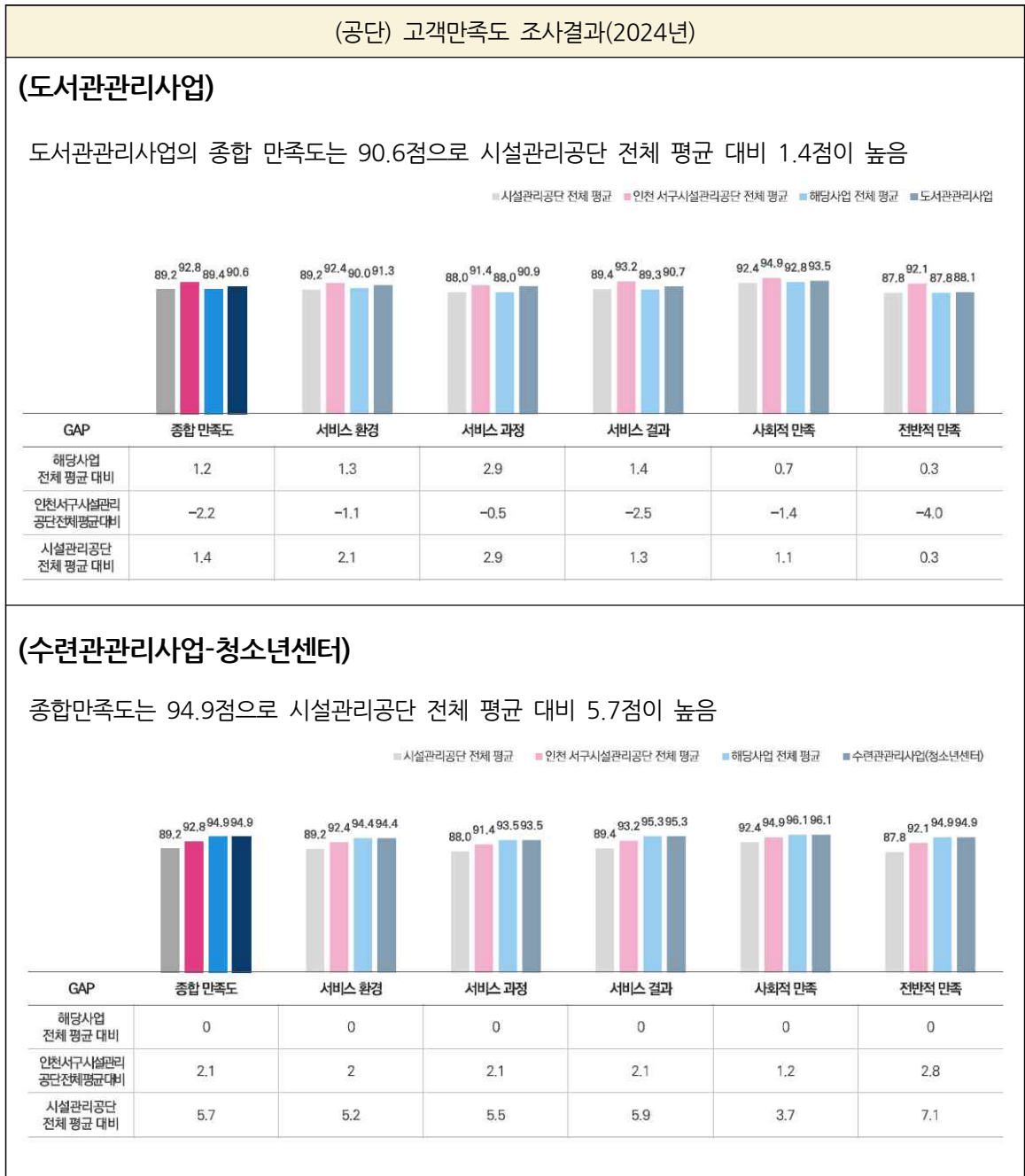
[표 55] 운영주체별 설립 목적

구분	공단	문화재단
설립 목적	<p>정관 제1조(목적)</p> <p>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u>구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의 청소년 성장지원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정관 제2조(목적)</p> <p>이 재단은「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u>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표 56] 인천서구문화재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2023)

(재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2023년)				
사업별 만족도 조사 평균 : 95.7점				
연번	구분	참여인원(명)	만족도총점(점)	만족도평균(점)
1	서구립 예술단 운영	102	9489	93.0
2	인천서구문화회관 운영	316	30615	96.9
3	청라블루노바홀 운영	493	46076.6	93.5
4	정서진 아트큐브 운영	71	6503.6	91.6
5	검암경서생활문화센터 운영	313	30173.2	96.4
6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131	12903.5	98.5
7	어린이 예술축제	24	2208	92.0
8	청라 뮤직&와인 페스티벌	525	51240	97.6
9	버스킹 페스티벌	49	4498.2	91.8
총계		2024	193707.1	95.7

[표 57]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2024)



1.5. 성과측정의 용이성

- 인천서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성과측정의 용이성은 높다고 판단됨
- 다만,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정부정책에 대한 기초 반영, 평가의 객관성, 지표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한 완결성 등의 측면에서 성과측정의 체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개선을 위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단과 공단의 경영평가에 관한 주요 개요는 다음 [표 58]과 같음

[표 58] 경영평가 개요

구분	공단	문화재단
관계법령 (경영평가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동법시행령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 주체	•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평가원	• 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서구청)에서 실시 (※통상적으로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함)
평가 주기	매년	매년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성과 등(※세부 지표에서 차이가 있음)	

- 기관 특성, 사업, 경영평가지표 구성, 평가방식 등의 차이가 있어 객관적 비교는 어려우나, 문화재단과 공단의 최근 경영평가등급은 다음 [표 59]와 같음

[표 59] 경영평가등급

구분	평가등급	
	공단	문화재단
평가(실적)연도		
2020(2019)	가	가
2021(2020)	나	나
2022(2021)	가	다
2023(2022)	나	다
2024(2023)	나	나

1.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성과측정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상위 감독기관과 독립적 감사실을 통한 인사, 재정, 시설 등과 관련 사항에 대한 내·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공단과 재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 등),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제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 감사·감찰 계획에 의해 회계연도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과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평가와 함께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를 실시

가. 공단

-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은 3본부, 4실, 5단, 4부로 구성
- 본부에 속해있지 않은 별도의 감사실을 두어 내부감사 또는 일상감사가 공단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가능함
 - 감사실은 반부패·윤리경영, 내·외부 감사, 진정·신고관리, 인권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는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한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임



[그림 4]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도

- 청렴서약, 노사평화선언, 지속가능보고서, ISO 경영방침 등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보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확보, 효율적 운영을 도모

나. 재단

- 인천서구문화재단은 2본부, 1실, 5팀, 1센터로 구성
- 재단은 윤리경영실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부패방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부당요구, 인사청탁 등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해를 끼치는 사항들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과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홈페이지를 통해 클린신고센터, 부패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을 안내하고 있음



[그림 5] 인천 서구문화재단 조직도

- 공단과 재단은 공익실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의 의무와 책무에 의해 감사 및 평가를 받음
 - 공단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서구청 등의 다각적인 주체를 통한 감사가 진행되어 관리·운영의 공정성 확보로 경영 전반의 윤리적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재단은 서구청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공단과 재단은 감사실, 윤리경영실 등의 별도 내부감사 시스템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진행
 - 공단은 조직 내 감사실을 통한 내부감사와 함께 모니터링, ISO심사, 시설평가 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표 60] 관리 및 운영 감독 기관 개요

구분	공단	문화재단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제73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제5조 	
상위 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경영, 안전 등),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을 통한 경영평가 •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 (서구청)에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종합감사, 행정사무 감사, 지도부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서구청)에서 실시 (※통상적으로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함) • 2년 주기로 인천광역시 서구청 감사실을 통한 종합감사 • 문화재단 정관에 구청장이 보고·검사감사 요청시 연 1회 내부감사 실시
자체 감독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내 감사실을 통한 내부감사 및 수시 감사 실시 •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 - ISO 심사 - 고객만족도조사 - 모니터링실시 • 청소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 - ISO 심사 - BSC시설평가 - 청소년자치기구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내 윤리경영실을 통한 관리
외부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옴부즈만 (외부전문위원 감사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감사 당연직 1명, 선임직 1명

1.7. 책임행정의 보장성

- 책임행정은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을 얻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지정·고시된 법인으로 일반 사법상의 법인이 아니라 특별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정도의 권리, 의무와 관련한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설립 목적 범위 안에서 위탁의 조건 등에 의하여 권리, 의무와 관련한 규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음
- 권한의 위탁은 행정권한이 독립된 법주체인 수탁기관에게 법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수탁기관은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는 수탁기관에게 귀속됨. 행정청의 권한은 위탁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탁기관은 이를 자기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게 됨²⁾
- 위임·위탁의 법률관계의 기본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가 위임 및 위탁기관에서 수임 또는 수탁기관으로³⁾ 변경되므로 위탁관계를 통해 책임행정이 보장됨

[표 61] 실정법 상의 논의

법정대리로서의 대행	위임·위탁으로서의 대행	행정사무지원으로서의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직영기업의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방직영 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강학상 행정권한의 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인력의 절감내지 전문성의 활용이라는 정책의도와 책임행정 보장이라는 정책의도의 균형을 위한 대안 • 위탁으로서의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 • 내부위임 또는 행정보조인

자료 : 장호진. 2024. 지방공공기관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 법학논총, 41(1), 199-223.

- 공단이나 재단 등의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한계에 대응하고 정책 집행력을 높일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 활용이 비교적 원활하게 운용가능 하며, 업무수행의 공정성, 효율성, 전문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⁴⁾

2) 장호진. 2024. 지방공공기관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 법학논총, 41(1), 199-223.

3) 상계서.

4) 윤난&김부열.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실태 비교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연구.24(2023): 215-255.

- 공단은 2023 지속가능한 경영보고서를 통해 책임경영을 경영전략의 하나로 수립하고 윤리경영, 기록물관리, 안전보건 경영, 친환경경영 등의 사업영역을 제시하여 ESG경영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책임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
 -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과제를 수립, 2026년까지 경영전략을 수립함
 - 책임경영의 목표로, 종합청렴도 1등급, 안전사고 Zero, 온실가스 42% 감축 등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까지 종합청렴도 2등급, 안전사고 Zero, 온실가스 36% 감축을 달성함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대 이슈로 부패방지노력, 건강 및 안전, 공기기업의 투명성(윤리경영) 요구, 공정경쟁 및 공정거래에 대한 요구 강화, 지역상생, 등 총 24가지 중대 이슈 Pool을 마련
 - 윤리경영, 인권경영,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등의 책임경영을 위한 추진체계, 관리체계와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 재단은 2025년 운영전략 목표의 하나로 책임경영실천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역량 확보, 사업성과의 객관적·체계적 평가실시를 세부 과제로 제시
 - ESG경영 실천을 확대 도입·실천·평가로 사회적 가치 확대 및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을 도모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용객, 협력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표 62] 책임행정 및 책임경영 방안

구분	공단	문화재단
책임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목적 범위 안에서 위탁의 조건 등에 의하여 권리, 의무와 관련한 규제 권한을 부여받음 • 업무수행의 공정성, 효율성, 전문성 	
책임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윤리경영, 인권경영,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등의 책임경영을 위한 추진·관리체계 및 고도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경영역량 확보 -사업성과의 객관적·체계적 평가 명시

2. 수지 분석(경제적 타당성)

2.1. 개요

가. 수지 분석의 전제

- 대상 사업을 인천광역시 서구 직영,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인천서구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경우 발생 가능한 비용과 수입에는 차이가 발생하며, 공단 또는 재단이 시설물·사업을 운영할 경우 직영보다 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임
-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위탁 목적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에 있음. 공단의 경우, 그간의 사업 운영에 따른 노하우, 인적 역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해왔다고 판단됨
- 다만, 어떤 운영관리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면 운영관리 방식 간 비교우위가 결정되므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입과 경비(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는 대안별로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전제함

나. 수입 및 비용 증가율 기준

1) 수입 증가율

- 수입 증가율은 청소년센터, 도서관 모두 2021~2024년 수입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일부 청소년센터는 인천시교육청 예산삭감 등으로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동기간 해당 사유가 없었던 서구청소년센터의 연평균 수익상승률인 0.53%를 적용하였음
- 한편, 도서관 부문의 사업수입은 대관료, 복사출력, 사물함, 기타 잡수입을 포함하나, 수익 자체가 크지 않아(2021~2024년 4개 도서관 합계 연평균 수입은 15,908천 원에 불과) 상승률 적용이 유의미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1%를 적용하였음

2) 비용 증가율

- 인건비는 최근 10년간 공무원 보수 연평균 상승률, 경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음

[표 63] 비용증가율

구분	비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2015	3.8	0.7
2016	3.0	1.0
2017	3.5	1.9
2018	2.6	1.5
2019	1.8	0.4
2020	2.8	0.5
2021	0.9	2.5
2022	1.4	5.1
2023	1.7	3.6
2024	2.5	2.3
연평균 상승률(%)	2.4	1.95

자료 : 소비자물가상승률(국가통계포털), 공무원 보수 인상률(기획재정부)

다. 인건비 기준

- 봉급(기본급)은 공무원, 공단, 문화재단의 일반직, 무기계약직의 호봉표⁵⁾를 적용하였음
- 기준호봉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봉급 산정 호봉 기준'을 적용하였음

[표 64] 기준 호봉표

공무원	공단	재단	기준호봉
5급	3급	3급	20
6급	4급	4급	23
7급	5급	5급	11
8급	6급	6급	5
9급	7급	7급	3
-	-	8급 ^{주)}	6(무기계약직)

주) 문화재단의 직급상, 8급 매칭이 불가능하여 이를 7급으로 적용하되, 임금은 문화재단의 7급과 8급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음

5) 공무원 무기계약직(현업직) 호봉테이블은 2025년 기준으로 갱신되지 않아, 재단 및 공단 현업직 2025년 호봉표를 적용함

- 기본급은 공무원, 공단, 재단의 각 호봉표 및 기준호봉을 적용하였으며, 급여성복리후생비 및 제수당은 기본급 대비 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였음

[표 65] 인건비 기준

구분	기본급	급여성복리후생비, 제수당 표준화 내역	적용 비율	출처
공무원	각 호봉표 및 기준호봉 적용	정근수당,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36.9%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내역 (총무과)
공무원 (무기계약직)	"	시간외수당, 연차유급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위험수당, 현장근로비, 직책수당 등	56.5%	"
공단 (일반직)	"	2021~2024년도 1인당 평균 급여성복리후생비, 제수당 지급액 준용	28.4%	기관별 클린아이 공시
공단 (무기계약직)	"	"	34.5%	"
재단 (일반직)	"	"	43.8%	"
재단 (무기계약직)	"	"	42.6%	"

[미산입 금액]

- ① 클린아이에 공시된 공단, 재단 급여에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액, 지급액, 총당금 등과 사회보장성 법정부담금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이 제외되어 있어,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급여도 표준화를 위해 해당 금액(예시: 연금 부담금 등)을 제외함
- ② 경영성과 의존도가 높은 변동급여인 성과상여금(경영평가급 등)은 제외함

○ 이상을 종합하여 운영 주체별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표 66] 인건비 테이블

구분	공무원		공단		재단	
	-	무기계약직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직급	5	-	3	-	3	-
호봉	20	10	20	10	20	10
기본급	58,930	28,086	58,930	28,086	58,930	28,086
급여성복리후생비 제수당(수당+초과 근무수당)	21,762	15,866	16,727	9,681	25,819	11,960
합계	80,692	43,952	75,656	37,768	84,749	40,047
직급	6	-	4	-	4	-
호봉	23	8	23	8	23	8
기본급	53,000	27,647	53,000	27,647	53,000	27,647
급여성복리후생비 제수당(수당+초과 근무수당)	19,573	15,617	15,044	9,530	23,221	11,773
합계	72,573	43,264	68,044	37,177	76,222	39,420
직급	7	-	5	-	5	-
호봉	11	6	11	6	11	6
기본급	37,489	27,183	37,489	27,183	39,431	27,183
급여성복리후생비 제수당(수당+초과 근무수당)	13,845	15,355	10,641	9,370	17,276	11,576
합계	51,334	42,539	48,130	36,553	56,708	38,759
직급	8	-	6	-	6	-
호봉	5	4	5	4	5	4
기본급	26,742	26,695	26,742	26,695	29,764	26,695
급여성복리후생비 제수당(수당+초과 근무수당)	9,876	15,080	7,591	9,202	13,041	11,368
합계	36,618	41,775	34,333	35,896	42,804	38,063
직급	9	-	7	-	7	-
호봉	3	2	3	2	3	2
기본급	24,474	26,183	24,632	26,183	24,912	26,183
급여성복리후생비 제수당(수당+초과 근무수당)	9,038	14,791	6,992	9,025	10,915	11,150
합계	33,512	40,974	31,624	35,209	35,827	37,333

라. 소요 인력 직급 산정 방법

- 대상 사업은 현재 공단이 운영 중으로 기존 인력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공단의 정원·직급을 적용하되, 대안별 매칭된 직급과 호봉을 활용하였음
- 신규 도서관의 경우, 검암도서관의 연면적과 유사하므로 13명(일반직 10명, 공무원 3명)을 설정하되 ①대표도서관이 검암도서관인 점(해당 사업장에 도서관사업단장 3급 배치), ②신규도서관임을 고려하여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였으며, 공무직은 동일하게 3명 배치하였음

[표 67] 신규도서관 정원 설정

구분	검암도서관	신규도서관
3급	1	-
4급	1	1
5급	1	2
6급	5	3
7급	2	4
공무직	3	3
합계	13	13

[공단 공무원]

전문직(시설관리, 수영강사, 헬스강사 등)과 현업직(주차, 안내데스크, 그린매니저 등)을 말함

2.2. 대안별 사업 수지 분석

가. 수입

- 청소년센터 및 도서관의 향후 5년간(2026년~2030년) 연도별 사업수입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68] 청소년센터 및 구립도서관 연도별 사업수입 추정

(단위: 천 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청소년센터	합계	184,863	185,842	186,827	187,817	188,813
	가좌청소년센터	41,013	41,230	41,449	41,668	41,889
	서구청소년센터	65,375	65,722	66,070	66,420	66,772
	검단청소년센터	39,458	39,667	39,878	40,089	40,301
	연희청소년센터	39,017	39,223	39,431	39,640	39,850
도서관	합계	20,247	20,450	20,654	20,861	21,070
	검암도서관	4,895	4,944	4,993	5,043	5,093
	단봉늘봄도서관	4,020	4,060	4,101	4,142	4,183
	검단도서관	3,794	3,831	3,870	3,908	3,948
	심곡도서관	1,414	1,428	1,442	1,457	1,471
	석남도서관	3,543	3,578	3,614	3,650	3,686
	신석도서관	2,583	2,609	2,635	2,661	2,688
	신규도서관 ^{주)}	5,712	5,769	5,827	5,885	5,944

주) 2026년부터 정상 운영을 가정함

**단봉늘봄
도서관,
신규도서관
수입/경비
추정**

- (운영개시일) 단봉늘봄도서관 개관일은 2025년 2월이며, 신규도서관은 미정으로 수입 및 경비 내역이 부재함(※1년 운영을 가정)
- 2024년 도서관 분야 총수입 및 총경비를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수입 및 경비에 사업수입 증가율 1%, 최근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1.95%로 보정 후, 단봉늘봄도서관 및 신규도서관(도서관 부분) 연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단위: 천 원

수입 (2025년)	단봉늘봄도서관	3,980
	신규도서관	5,655
경비 (2025년)	단봉늘봄도서관	370,802
	신규도서관	526,853

나. 지출

1) 인건비 추정

가) 청소년센터 부문

- 청소년센터 부문 ①직영, ②공단, ③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시설별 인건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69] 운영방식에 따른 청소년센터 인건비 추정

(단위: 천 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직영	합계	1,835,144	1,879,187	1,924,288	1,970,471	2,017,762
	가좌청소년센터	570,695	584,392	598,418	612,780	627,486
	서구청소년센터	571,625	585,344	599,392	613,778	628,508
	검단청소년센터	320,129	327,812	335,679	343,736	351,985
	연희청소년센터	372,695	381,639	390,799	400,178	409,782
공단	합계	1,684,977	1,725,417	1,766,827	1,809,230	1,852,652
	가좌청소년센터	525,474	538,085	550,999	564,223	577,764
	서구청소년센터	522,726	535,271	548,118	561,273	574,743
	검단청소년센터	293,746	300,796	308,015	315,407	322,977
	연희청소년센터	343,031	351,264	359,695	368,327	377,167
문화재단	합계	1,913,268	1,959,186	2,006,207	2,054,356	2,103,660
	가좌청소년센터	597,762	612,108	626,798	641,842	657,246
	서구청소년센터	592,032	606,241	620,791	635,690	650,946
	검단청소년센터	332,703	340,688	348,864	357,237	365,811
	연희청소년센터	390,772	400,150	409,754	419,588	429,658

나) 도서관 부문

- 도서관 부문 ①직영, ②공단, ③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시설별 인건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70] 운영방식에 따른 구립도서관 인건비 추정

(단위: 천 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직영	합계	3,139,680	3,215,032	3,292,193	3,371,206	3,452,115
	검암도서관	596,303	610,614	625,269	640,275	655,642
	단봉늘봄도서관	429,438	439,745	450,299	461,106	472,172
	검단도서관	407,248	417,022	427,030	437,279	447,774
	심곡도서관	381,938	391,104	400,491	410,103	419,945
	석남도서관	357,625	366,208	374,997	383,997	393,213
	신석도서관	407,248	417,022	427,030	437,279	447,774
	신규도서관	559,880	573,317	587,077	601,166	615,594
공단	합계	2,875,453	2,944,464	3,015,131	3,087,494	3,161,594
	검암도서관	549,275	562,457	575,956	589,779	603,934
	단봉늘봄도서관	396,442	405,957	415,700	425,677	435,893
	검단도서관	368,607	377,453	386,512	395,789	405,287
	심곡도서관	348,079	356,433	364,987	373,747	382,717
	석남도서관	328,903	336,796	344,879	353,156	361,632
	신석도서관	368,607	377,453	386,512	395,789	405,287
	신규도서관	515,541	527,914	540,584	553,558	566,843
문화재단	합계	3,277,519	3,356,180	3,436,728	3,519,210	3,603,671
	검암도서관	634,500	649,728	665,322	681,290	697,641
	단봉늘봄도서관	457,052	468,022	479,254	490,756	502,534
	검단도서관	412,081	421,971	432,098	442,468	453,088
	심곡도서관	393,774	403,224	412,902	422,811	432,959
	석남도서관	376,534	385,571	394,825	404,301	414,004
	신석도서관	412,081	421,971	432,098	442,468	453,088
	신규도서관	591,497	605,693	620,229	635,115	650,358

2) 경비 추정

○ 청소년센터, 도서관의 시설별 경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71] 청소년센터 및 구립도서관 경비 추정

(단위: 천 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청소년센터	합계	575,268	586,486	597,922	609,582	621,469
	가좌청소년센터	169,085	172,382	175,743	179,170	182,664
	서구청소년센터	198,899	202,778	206,732	210,763	214,873
	검단청소년센터	102,322	104,317	106,351	108,425	110,539
	연희청소년센터	104,962	107,009	109,096	111,223	113,392
도서관	합계	1,727,147	1,760,826	1,795,162	1,830,168	1,865,856
	검암도서관	311,281	317,351	323,539	329,848	336,281
	단봉늘봄도서관	378,032	385,404	392,919	400,581	408,393
	검단도서관	127,085	129,563	132,090	134,666	137,292
	심곡도서관	126,206	128,667	131,176	133,734	136,342
	석남도서관	136,193	138,849	141,557	144,317	147,131
	신석도서관	111,222	113,391	115,602	117,856	120,154
	신규도서관	537,126	547,600	558,278	569,165	580,264

2.3. 운영방식별 5년간 수지 분석

가. 청소년센터 부문

- 이상을 종합하여 청소년센터 부문의 운영방식별 5년간(2026~2030년) 수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청소년센터를 직영 운영 시 5개년 평균 1,738,538천 원의 적자를 보이며, 공단 운영 시 1,580,988천 원의 적자를 보이고 문화재단 운영 시 1,820,503천 원의 적자를 보임
- 사업의 특성상, 직영·공단·문화재단 운영 모두 비용의 5할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워 기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청소년센터를 공단이 운영할 경우, 직영 방식보다 5개년 평균 157,550천 원, 문화재단 운영 대비 239,515천 원의 사업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직영 및 문화재단 운영보다 비용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표 72] 운영방식에 따른 청소년센터 수지분석(2026-2030)

(단위: 천 원)

구분		5년 평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직영 방식 (A)	수입	186,833	184,863	185,842	186,827	187,817	188,813
	비용(인건비)	1,925,370	1,835,144	1,879,187	1,924,288	1,970,471	2,017,762
	비용(경비)	598,145	575,268	586,486	597,922	609,582	621,469
	비용(소계)	2,523,516	2,410,412	2,465,673	2,522,210	2,580,053	2,639,231
	수지	-1,738,538	-1,650,281	-1,693,345	-1,737,461	-1,782,653	-1,828,949
	수지비율	7.40%	7.67%	7.54%	7.41%	7.28%	7.15%
공단 방식 (B)	수입	186,833	184,863	185,842	186,827	187,817	188,813
	비용(인건비)	1,767,821	1,684,977	1,725,417	1,766,827	1,809,230	1,852,652
	비용(경비)	598,145	575,268	586,486	597,922	609,582	621,469
	비용(소계)	2,365,966	2,260,245	2,311,902	2,364,749	2,418,812	2,474,121
	수지	-1,580,988	-1,500,115	-1,539,574	-1,579,999	-1,621,413	-1,663,839
	수지비율	7.90%	8.18%	8.04%	7.90%	7.76%	7.63%
재단 방식 (C)	수입	186,833	184,863	185,842	186,827	187,817	188,813
	비용(인건비)	2,007,336	1,913,268	1,959,186	2,006,207	2,054,356	2,103,660
	비용(경비)	598,145	575,268	586,486	597,922	609,582	621,469
	비용(소계)	2,605,481	2,488,536	2,545,672	2,604,129	2,663,938	2,725,129
	수지	-1,820,503	-1,728,405	-1,773,344	-1,819,380	-1,866,538	-1,914,848
	수지비율	7.17%	7.43%	7.30%	7.17%	7.05%	6.93%
수지개선 효과 (직영 대안으로서 공단)		157,550	150,167	153,771	157,461	161,240	165,110
수지개선 효과 (직영 대안으로서 재단)		-81,965	-78,124	-79,999	-81,919	-83,885	-85,898
수지개선 효과 (재단 대안으로서 공단)		239,515	228,291	233,770	239,380	245,125	251,008

나. 도서관 부문

- 도서관 부문의 운영방식별 5년간(2026~2030년) 수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서관을 직영 운영 시 5개년 평균 3,273,389천 원의 적자를 보이며, 공단 운영 시 2,996,171천 원의 적자를 보이고 문화재단 운영 시 3,418,005천 원의 적자를 보임
- 전술한 바와 같이 도서관 운영수입은 일부 공간의 대관료, 사물함 이용료 등 소액에 불과해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기업성이 미흡하고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
- 다만 도서관을 공단이 운영할 경우, 직영 방식보다 5개년 평균 277,218천 원, 문화재단 운영 대비 421,834천 원의 사업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직영 및 문화재단 운영보다 비용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표 73] 운영방식에 따른 구립도서관 수지분석(2026-2030)

(단위: 천 원)

구분		5년 평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직영 방식 (A)	수입	20,656	20,247	20,450	20,654	20,861	21,070
	비용(인건비)	3,294,045	3,139,680	3,215,032	3,292,193	3,371,206	3,452,115
	비용(경비)	1,795,832	1,727,147	1,760,826	1,795,162	1,830,168	1,865,856
	비용(소계)	5,089,877	4,866,827	4,975,858	5,087,355	5,201,373	5,317,971
	수지	-3,273,389	-3,119,432	-3,194,582	-3,271,539	-3,350,345	-3,431,045
	수지비율	0.41%	0.42%	0.41%	0.41%	0.40%	0.40%
구분		5년 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단 방식 (B)	수입	20,656	20,247	20,450	20,654	20,861	21,070
	비용(인건비)	3,016,827	2,875,453	2,944,464	3,015,131	3,087,494	3,161,594
	비용(경비)	1,795,832	1,727,147	1,760,826	1,795,162	1,830,168	1,865,856
	비용(소계)	4,812,659	4,602,600	4,705,290	4,810,293	4,917,662	5,027,450
	수지	-2,996,171	-2,855,206	-2,924,014	-2,994,477	-3,066,633	-3,140,524
	수지비율	0.43%	0.44%	0.43%	0.43%	0.42%	0.42%
구분		5년 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재단 방식 (C)	수입	20,656	20,247	20,450	20,654	20,861	21,070
	비용(인건비)	3,438,662	3,277,519	3,356,180	3,436,728	3,519,210	3,603,671
	비용(경비)	1,795,832	1,727,147	1,760,826	1,795,162	1,830,168	1,865,856
	비용(소계)	5,234,493	5,004,666	5,117,006	5,231,890	5,349,377	5,469,527
	수지	-3,418,005	-3,257,272	-3,335,730	-3,416,074	-3,498,349	-3,582,601
	수지비율	0.39%	0.40%	0.40%	0.39%	0.39%	0.39%
수지개선 효과 (직영 대안으로서 공단)		277,218	264,227	270,568	277,062	283,712	290,521
수지개선 효과 (직영 대안으로서 재단)		-144,617	-137,840	-141,148	-144,535	-148,004	-151,556
수지개선 효과 (재단 대안으로서 공단)		421,834	402,066	411,716	421,597	431,716	442,077

3. 인력수요 검토

3.1. 청소년센터

- 청소년지도사 및 기타 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인력기준을 기반으로 검토함
- 「청소년기본법」 과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지도사배치 의무와 배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함

청소년 지도사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청소년 지도사 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2 관련 [별표5]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 청소년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 500명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또는 2급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을 배치 - 수용인원 500명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 250명당 1급 또는 2급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 ○ 청소년문화의 집 :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 ○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정원대비 1.5% 이상 확보 <p>*국가인건비를 지원하는 배치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력으로 미포함</p>

- 이를 토대로 다음 표와 같이 공단이 관리하는 청소년센터별 수용인원을 적용하여 최소 운영인력을 산출함
- 법령에 다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최소 배치인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배치기준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서는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를 최소 1.5%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현재 공단의 청소년시설 배치인력 검토 결과, 정원 준수를 전제로 충원이 필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구청소년센터 일반직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1명 대체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공석인 전문직 2명, 가좌청소년센터 전문직(배치지도사) 1명 인원 충원을 통해 인력배치 기준 준수가 필요함

[표 74] 청소년센터 부문 인력 검토

(단위: 명)

시설 종류	수용 정원	최소배치인원(명)				해당 시설	수용 정원 (명)	요구 인력 (명)	여성 가족부 지침 (명)	공단 배치인원 (현원)(명)		충원 필요 인력 (명)
		합 계	1급	2급	3급					청소 년지 도사	배치 지도 사	
청소년 수련관	500 명 이하	4	1	1	2	서구청소년센터	498	4	7.5	9	1	1.5
		4	1	2	1							
		4	1	3								
		4	2	2								
		4	3	1								
청소년 문화의 집	-	1				검단청소년센터	205	1	3.1	3	1	-0.1
						연희청소년센터	213	1	3.2	3	1	-0.2
						가좌청소년센터	304	1	4.6	5	1	1.4

3.2. 도서관

- 도서관 사서 및 기타 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인력 기준을 기반으로 검토함

<p>사서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중장기전략계획수립, 정보자료조직화, 장서개발 및 정보자료관리, 프로그램 제공, 대외협력 등
<p>사서 배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1 관련 [별표5] 사서의 배치기준 →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 공공도서관당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 $\text{사서 수} = \frac{\text{공공도서관당 인구수} - 2\text{만명}}{2\text{만명}}$ ○ 인천광역시 인구수는 2025년 3월 기준 3,031,361명, 공공도서관은 64개 기준으로 산정함 ○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 $\text{사서 수} = \frac{\text{도서관 면적} - 330\text{㎡}}{330\text{㎡}}$
<p>사서 요구 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인력 4명 (기본인력 + 서비스면적 산출인력 + 인구수 기준 산출인력)

- 신규도서관은 생활SOC복합청사 내부에 위치하여(※도서관 외 행정복지센터, 건강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도서관 서비스 전용면적이 세부 실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도서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실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①사무공간, 보존서고, 창고 등의 면적을 제외한 ‘1안’과 ②열람실, 프로그램실을 포함한 ‘2안’으로 구분하여 사서 요구 인력을 산출한 결과 ‘1안’은 8명, ‘2안’은 7명으로 나타남

[표 75] 대안별 사서 요구 인력

(단위: m²)

구분		실구성	1안 (사무공간, 보존서고, 창고 제외)	2안 (열람실, 프로그램실만 포함)
도서관 전용 면적	열람실	1254.67	1254.67	1221.10
	프로그램실	88.23	88.23	88.23
	전시공간	71.77	71.77	-
	사무공간	60.92	-	-
	보존서고	47.21	-	-
	창고 등	75.24	-	-
서비스 전용면적		1598.04	1414.67	1309.33
사서 요구 인력		-	8명	7명

- 기존 도서관을 포함하여 사서 인력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현실적으로 각 도서관은 부족한 사서를 기간제 인력 활용)

[표 76] 도서관별 사서 인력 산출

(단위: 명)

구분	인구수 산출인력 (A)(명)	서비스 면적		기본 인력 (C)(명)	합계 (A+B+C) 요구인력	사서 현원과의 차이
		서비스 면적(m ²)	면적 산출 인력(B)(명)			
검암	1	972.57	1	4	6	0.0
단봉늘봄	1	1,092.18	2	4	7	-2.0
검단	1	1,029.00	2	4	7	-2.0
심곡	1	865.42	1	4	6	-2.0
석남	1	763.70	1	4	6	-2.0
신석	1	606.61	0	4	5	0.0
신규도서관 (※1안 기준)	1	1,414.67	3	4	8	-

자료 : 공단 내부자료 및 인천광역시 인구수 기준일: 25.03

※ 전자도서 부문, 운영총괄(도서관사업단장)은 제외하였으며, 사서는 현원 기준임

- 신규도서관의 운영인력 기준은 사서 8명으로 검암도서관의 연면적 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이나 검암도서관에 운영총괄(도서관사업단장) 정원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유사 수준인 12명을 제안함

[표 77] 인력 구성(안)

(단위: 명)

구분	행정	사서	기타	계(명)
관장	-	1	-	1
일반직	1	7	1 (전기·기계)	9
공무직	-	-	2 (미화1, 시설1)	2
합계				12

4. 위탁 종합 판단 및 제언

-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제1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는 위탁이 가능하며, 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이 적용받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3조 등에 따라 본 사업은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어 법률적으로 타당함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측면에서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는 생활밀착형 공공 시설로서, 건립의 목적을 고려할 때, 주민복지 증진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이며, 시장성 테스트 결과, 본 사업은 체크 항목 중 공공시설 물의 관리·운영 항목에 해당되고 사업수익이 부족하여 민간영역의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은 아님
- 한편, 공단의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부문 업력과 공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단 대비 다소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전문지식에 대한 향후 활용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공단 및 재단은 ①상위 관리·감독기관, ②감사실, 윤리경영실과 같은 내부 통제 조직을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위·수탁관계를 통해 책임행정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들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직영, 공단, 재단 방식 모두 비용의 5할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워 기업성은 부족하나 비용효율성은 공단 방식이 직영 또는 문화재단 운영방식 대비 사업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이상의 위탁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라 청소년센터(문화의집) 및 도서관 사업을 검토한 결과, 공단 운영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표 78] 운영 주체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직영	공단	문화재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	○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
책임행정의 보장성	◎	○	○
경제적 타당성	○	◎	●

◎ 우수 ○ 보통 ● 미흡